

#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12.

정 재 호 · 강 성 훈



## 서 언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이후 거대 경제권인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중국 등과의 FTA도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교역의 절반 이상이 FTA 체결국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FTA 확산이라는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관세환급 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FTA로 인해 관세부담 없이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었지만, 모든 원재료에 대해 관세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여전히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FTA 시행으로 FTA 특혜를 받은 수입 원재료와 그렇지 않은 수입 원재료 사이에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개별환급제도에서는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간이징액환급제도에서는 국산 원재료 사용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환급 자료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통해 FTA 확대라는 경제적 변화에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 관련 정책시사점들이 향후 FTA 확대 시대에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선임연구위원과 강성훈 부연구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인천대학교 이명헌 교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곤 박사,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본 연구원의 이은경 전문연구원, 안승연 연구원, 장정순 주임연구행정원, 그리고 원고 교정을 맡아 준 연구출

판팀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FTA 확산이라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세환급제도의 활용 현황을 업체 규모별, 산업별, 환급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액 변화 추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이 2008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은 2조원 정도였지만,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에 3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관세환급액의 빠른 증가는 개별환급액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지만 간이정액환급도 역시 전체적인 관세환급 변화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액 증가는 석유제품 산업의 개별환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석유제품 산업의 2007년도 개별환급액은 약 2,800억원인데 2012년에는 약 2조원을 넘어 5년 사이에 개별환급액이 약 1.7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화학제품 산업에서 약 2천억원 이상, 그리고 일반기계,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약 1천억원 정도의 개별환급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수출업체당 개별환급액도 2000년 약 2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6억원까지 증가하였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도 수출업체당 환급액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0.15억원 정도였지만, 2012년에는 0.26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업체당 간이정액환급액이 1~2억원인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수출에 참여하여 환급을 받고 있었다.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관

세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업체들의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관세환급을 받고 수출한 금액이 2001년에는 약 100조원이었는데 2004년에 200조원을 넘긴 이후 2011년 300조원, 그리고 2013년에는 약 400조원에 육박하였다. 이처럼 관세환급액 규모가 큰 업체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세환급액도 동시에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석유제품 산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개별환급액이 약 94%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이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 1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수는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가 약 60%,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는 40%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 수는 많지만 환급액 규모는 작다.

환급액 규모별로 보면, 환급 받는 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이다. 2013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약 95%이고, 개별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약 76%이다. 수출액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에서도 환급규모가 커질수록 수출에 기여하는 한계 효과가 작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환급 대상 수출액에서 환급액 비율을 살펴보면, 개별환급이 간이정액환급보다 약 2배 정도로 비율이 높아 간이정액환급보다 개별환급이 수출에 대한 비용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관세환급액을 비교해 보면,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많다. 2012년에는 석유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액이 2조원을 넘어 전체 관세환급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수송장비 산업, 일반기계 산업 등의 순서로 환급액이 많았다. 이들 5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약 80%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석유 및 석탄제품,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그리고 화학제품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관세환급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일반기계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으로 이들 4개 산업이 전체 간이정액환급액의 약 72.8%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관세환급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의 경우,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은 0.578에서 0.963의 범위에 있으며 전기 및 전자산업의 관세환급액의 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이 0.802에서 0.997의 범위였다.

특히,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 분석결과에서 석유 및 석탄제품의 탄력성이 0.578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으며,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수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각각 0.5%와 0.6%이었지만,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은 1.3%로 이들 산업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전량을 수입하는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다른 산업들에 앞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보다는 관세환급제도의 비효율을 없애는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면세제도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석유제품 산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비자 과세주의에 의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수입 원재료의 관세액을 환급해주는 것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의 관세납부 사실과 그 해당 원재료가 수출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면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의 원재료 배분 등의 문제로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원재료의 납세여부를 불문하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나마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FTA를 통해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원재료의 국산화를 저해하면서 과다 환급의 문제만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제도 취지에 맞게 환급액이 소액인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과다 환급이 보조금 문제로 연계되어 통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간이정액환급제도 자체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간이정액환급은 관세율과 거의 상관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FTA가 확대되어 수입 원재료의 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급액의 수출효과를 보면, 개별환급에 비해 간이정액환급의 한계 수출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간이정액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액이 작을수록 환급에 따른 한계 수출효과가 개별환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급액 1억원 이하인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이들 업체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FTA가 확대되면서 FTA 특혜세율이 0%인 품목은 우선적으로 간이정액대상에서 제외해서 과다

환급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의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간이정액환급보다 높은 것이 타당하지만,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분석되어 제1차 금속제품 산업과 관련된 간이정액환급 품목의 환급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농림수산물 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에 비해 수출액 대비 환급액이 지나치게 낮아 과소 환급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과 관련해서는 FTA로 인해 동일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 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이 인정되고 있지만, 관세율이 상이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체 환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교역의 절반 이상을 FTA 체결국들과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의 원재료 배분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체환급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관세 환급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세율 차이가 큰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을 제한함으로써 FTA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별환급에서 평균 수출액 대비 환급률이 높은 산업으로는 기타제조업제품, 정밀기기,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관세가 부과된 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이들 산업들의 환급률이 추후에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이들 산업에서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관세환급 품목에 주목하면서 FTA를 통한 원재료 수입을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모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용 원재료 사이의 관세율 차이를 사전면세제도를 통해 없앴으로써 과다 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곧 과다 환급에 따른 보조금 문제와 통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향후에도 관세환급에 따른 비용과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세제도 등의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추이 및 특징과 함께 환급종류별, 산업별, 환급규모별로 분류하여 통계적 분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한된 자료로 인해 회귀분석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과 달리 관세환급의 평균적인 수출효과뿐만 아니라 수출 및 관세환급 규모에 따라 관세환급의 수출효과 및 수출액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향후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I. 서론	17
II.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현황	23
1. 관세환급제도의 개념 및 목적	23
가. 관세환급의 개념	23
나. 관세환급의 목적	23
2.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종류	25
가. 개별환급제도	25
나. 정액환급제도	26
3. 관세환급제도 운용 현황	28
가. 전체 관세환급 운용 추이	28
나.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운용 추이	31
III. 관세환급제도 활용 및 효과분석	40
1. 관세환급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40
가. 환급신청 업체 규모별 통계분석	40
나. 환급제도별 변화 추이 분석	44
다. 산업별 관세환급액 비교 분석	50
라. 산업별 관세환급 실적변화 추이 분석	62
2.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효과	68
가. 관세환급 종류별·산업별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분석	68
나. 수출업체 규모별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분석	89
다. 실증분석의 한계	96
라.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6

IV.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	99
1. FTA로 인한 대체환급 문제 .....	100
가. FTA로 인한 개별환급 문제 .....	100
나. 국산 원재료의 대체환급 .....	101
2.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개선 .....	105
가. 적용 중소기업 규모 .....	105
나. 적용 품목 .....	110
3. 석유제품 관련 관세환급제도 개선 .....	113
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	113
나. 사전면세제도의 장단점 .....	115
다. 사전면세제도 효과 활용 .....	116
4. 일부 사전면세제도의 확대 .....	118
V. 요약 및 결론 .....	121
참고문헌 .....	127

---

---

## 표목차

〈표 II-1〉 간이정액환급 적용품목 수 .....	27
〈표 II-2〉 개별환급 및 전체 환급실적 비교 .....	34
〈표 II-3〉 간이정액환급 및 전체 환급실적 비교 .....	37
〈표 III-1〉 산업별 관세환급액 비교(2013년) .....	52
〈표 III-2〉 산업별 관세환급액 비교(2012년) .....	52
〈표 III-3〉 산업별 환급관련 수출액 비교(2013년) .....	54
〈표 III-4〉 산업별 환급관련 수출액 비교(2012년) .....	54
〈표 III-5〉 산업별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 비교(2013년) .....	57
〈표 III-6〉 산업별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 비교(2012년) .....	58
〈표 III-7〉 산업별 환급관련 수출액 비중 비교(2013년) .....	59
〈표 III-8〉 산업별 환급관련 수출액 비중 비교(2012년) .....	60
〈표 III-9〉 산업별 관세환급 이용 업체 수 비교(2012년) .....	62
〈표 III-10〉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70
〈표 III-11〉 관세환급 종류별 기초통계량 .....	73
〈표 III-12〉 관세환급 종류별 · 산업별 기초통계량 .....	75
〈표 III-13〉 회귀분석 결과: 개별환급 .....	82
〈표 III-14〉 회귀분석 결과: 간이정액환급 .....	83
〈표 III-15〉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종류별 · 산업별 관세환급의 탄력성 .....	86
〈표 III-16〉 산업별 회귀분석 결과: 개별환급 .....	87
〈표 III-17〉 산업별 회귀분석 결과: 간이정액환급 .....	88
〈표 IV-1〉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	102

---

〈표 IV-2〉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	103
〈표 IV-3〉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3: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 판정지침 ...	103
〈표 IV-4〉 간이정액환급 이용 중소기업 수 .....	107
〈표 IV-5〉 수출품목별 수출액 기준 순위 .....	114
〈표 IV-6〉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 변화 .....	117
〈표 IV-7〉 석유제품의 수출과 내수 비중 추이 .....	118

---

## 그림목차

[그림 II-1] 관세환급액 변화 .....	29
[그림 II-2] 간이정액환급 변화 .....	30
[그림 II-3] 관세부과액 대비 관세환급 변화 .....	31
[그림 II-4] 개별환급액과 간이정액환급액 규모 비교 .....	32
[그림 II-5]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수 비교 .....	33
[그림 II-6] 개별환급 및 전체 관세환급 업체별 환급액 .....	35
[그림 II-7] 개별환급 및 전체 관세환급 건당 환급액 .....	36
[그림 II-8] 간이정액환급 업체당 환급액 .....	38
[그림 II-9] 간이정액환급 및 전체 관세환급 건당 환급액 .....	39
[그림 III-1] 개별환급액 규모별 업체 수 및 환급액 비중(2013년) .....	41
[그림 III-2] 간이정액환급액 규모별 업체 수 및 환급액 비중(2013년) .....	42
[그림 III-3] 환급제도별 업체 수 비중(2013년) .....	42
[그림 III-4] 환급제도별 환급액 비중(2013년) .....	43
[그림 III-5]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수 비중(1억원 미만 업체) .....	44
[그림 III-6]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수 비중 .....	45
[그림 III-7] 간이정액환급 적용 수출액 .....	46
[그림 III-8] 간이정액환급 적용 수출액 .....	46
[그림 III-9] 개별환급 이용 업체 수 비중(1억원 미만) .....	47
[그림 III-10] 개별환급 이용 업체 수 비중 .....	48
[그림 III-11] 개별환급 적용 수출액 .....	49
[그림 III-12] 개별환급 적용 수출액(6억원 초과) .....	49
[그림 III-13] 산업별 개별환급액 추이 .....	63

---

[그림 III-14] 산업별 개별환급 관련 수출액 추이 .....	64
[그림 III-15] 수출액 대비 개별환급비율 추이(평균 이상) .....	65
[그림 III-16] 수출액 대비 개별환급비율 추이(평균 이하) .....	66
[그림 III-17] 산업별 간이정액환급액 추이 .....	67
[그림 III-18] 산업별 간이정액환급 관련 수출액 추이 .....	67
[그림 III-19] 평균 관세율: 개별환급 .....	71
[그림 III-20] 평균 관세율: 간이정액환급 .....	71
[그림 III-21] 개별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수출액 비교(2001~2012년) .....	77
[그림 III-22] 개별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관세환급액 비교(2001~2012년) .....	77
[그림 III-23] 개별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평균관세율 비교(2001~2012년) .....	78
[그림 III-24]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수출액 비교(2001~2012년) .....	78
[그림 III-25]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관세환급액 비교(2001~2012년) .....	79
[그림 III-26]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평균관세율 비교(2001~2012년) .....	79
[그림 III-27]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 개별환급 .....	91
[그림 III-28]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 간이정액환급 .....	91
[그림 III-29]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효과: 개별환급(3억원 미만) .....	94
[그림 III-30]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효과: 개별환급(3억원 이상) .....	94
[그림 III-31]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효과: 간이정액환급(3억원 미만) .....	95
[그림 III-32]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효과: 간이정액환급(3~6억원) .....	95
[그림 IV-1] 일반세율과 FTA 세율 적용에 따른 과다 환급 가능성 .....	101
[그림 IV-2]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1억원 미만 업체 수 비중 .....	108
[그림 IV-3] 석유 및 석탄제품이 전체 관세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114

---

# I. 서론

---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이후 해외로 수출할 경우, 해당 수입 원재료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국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소비지 과세주의라고 하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급 처리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수입 원재료 대신 국산 원재료 사용을 권장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별환급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액환급제도이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별 소요량을 파악하고 해당 원재료가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액만큼을 수출 이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또 다른 제도인 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와 달리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납부액과 관계없이 수출 품목별로 사전에 정부에서 정한 금액만큼을 수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별 원재료별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개별환급제도에 비해 간이정액환급제도에서는 과소 또는 과다 환급이 항상 발생한다. 정확한 관세환급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복잡한 원재료 소요량 산정 등에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정비용으로 인해 소액의 관세환급을 포기하여 결국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할 때

에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간접적으로 원재료 국산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관세환급제도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처음으로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였으며, 그 이후 싱가포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아세안(ASEAN), 인도 등과 FTA를 발효하였다.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 미국 등과의 FTA를 체결하는 등 2014년 8월까지 9개 국가(지역)와 FTA를 발효하였고,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도 다수의 국가들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가 확대되는 등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적합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FTA 확산으로 원재료의 관세율이 인하되어 그만큼 관세환급도 감소하고 환급에 따른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규모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2조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5조원까지 증가하였다.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지만 관세환급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FTA 확산으로 인해 과다 환급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FTA가 확산되면서 동일한 품목인 경우에도 FTA 협정세율에 따라 국가별로, 연도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동일한 품목에 다수의 관세율이 혼재하고 있어 개별환급의 경우 과다 환급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FTA를 통해 무세로 수입된 원재료와 그렇지 않고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내수용과 수출용에 동시에 사용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모두 수출용 관세환급에 적용하여 과다 환급을 받는 경우이다. 또는 이 두 원재료를 혼합해서 사용함으로써 관세환급액 산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원재료의 관세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 사실만으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다 환급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사실만으로 관세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관세환급을 더 받기 위해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FTA가 확산되면서 FTA로 인해 무세로 수입되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환되어 과다 환급에 따른 원재료 국산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FTA 확산으로 인해 관세환급의 역할이 축소되어 결국은 제한적으로 운용되겠지만,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FTA 확산으로 인한 과다 환급 등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FTA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환급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장근호·김진수(1997), 정재호·이명현(2002), 박현희(2010), 박현희(2011), 정재완(2011a), 정재완(2011b), 장근호·허용석(2012) 등이 있다.

관세환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우선 장근호·김진수(1997)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관세환급액을 추정하여 관세환급이 수출과 국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환급이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지만, 국산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로 인해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재호·이명현(2002)에서는 일반균형연산모형(CGE)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환급에 따른 행정 및 순운비용을 감안할 경우,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하고 그만큼 관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이

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정부에서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다. 박현희(2010)와 박현희(2011)에서는 관세환급 관련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수출 공급함수를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관세환급제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두 논문은 분석기간이 상이하다.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논의한 정재완(2011a)과 정재완(2011b)에서는 업체들이 관세환급제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논문들이다. 정재완(2011a)에서는 관세환급제도 중 간이징액환급제도에 대해 해당 업체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과다 환급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소요량실적증명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중소기업들도 선택적으로 개별환급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재완(2011b)에서는 개별환급제도에 대해 관세환급이 과다 또는 과소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의 합리적 관세환급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 중에서 FTA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로는 박현희(2010)와 장근호·허용석(2012)이 있다. FTA 확산이 최근에 이루어진 경제현상으로 관세환급과 FTA를 연계해서 논의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박현희(2010)에서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논쟁이 된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세이프가드조항 도입과 관련된 쟁점 사항과 진행 과정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주장대로 관세환급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근호·허용석(2012)에서는 한·EU FTA에서 도입된 관세환급 세이프가드조항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세이프가드 규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관세환급제도의 유지가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관세환급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환급제도별, 산업별, 업체 규모별로 관세환급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자

료를 이용하여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거나 연도별 전체 관세환급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인 수출 함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세환급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환급제도별, 산업별, 업체 규모별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관세환급제도의 특징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수출지원 등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FTA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관세환급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개별환급과 관련해서는 FTA로 인해 동일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이 인정되고 있지만, 관세율이 상이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체환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FTA로 인해 간이징액환급에서도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간이징액환급제도의 제도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FTA가 확대되면서 과다 환급 문제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세율 수준이 낮아지고 무세화되면서 관세환급 관련 문제가 축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FTA로 인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아닌 사전면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특히, 원유와 같이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면서 수입된 원유의 절반 이상이 가공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관세환급보다는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운용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환급과 달리 사전면세제도는 과다 환급과 이에 따른 보조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지만, 관세환급제도 자체가 복잡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정재완(2011a) 등을 비롯해서 다수의 기존 논문들에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 현황을 살펴본다. 관세환급제도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인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누어 제도 개요와 변천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이들 관세환급제도의 운용 현황 및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관세환급자료를 이용하여 관세환급 종류별, 산업별, 그리고 업체규모별 관세환급의 특징을 분석하고,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FTA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환급 관련 문제점들을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하여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

## Ⅱ.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현황

---

### 1. 관세환급제도의 개념 및 목적<sup>1)</sup>

#### 가.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은 과세당국에 납부한 관세 등을 도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오납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액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하였거나,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환급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1975년부터 실시되었다. 그 이전에는 관세환급제도 대신 사전면세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사전에 면세해 주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 교역규모가 급증하면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전면세제도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sup>2)</sup>

#### 나. 관세환급의 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실시하는 목적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

---

1) 이하의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본원의 『재정포럼』에 발표한 원고의 일부(정재호(2014), pp. 27~30)를 참고하여 제작성함

2) 장근호·김진수(1997), pp. 50~53를 참고하여 작성함

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sup>3)</sup>에서는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1) 수출지원

소비지과세주의 원칙에 의해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이루어진다. 소비지과세주의 원칙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곳에서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수출되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은 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2) 균형있는 산업 발전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를 선납하고, 수출한 이후에 다시 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행정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만약 수출업체가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금융비용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원재료보다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려는 유인이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출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부수적으로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유도하여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관세환급특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목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이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에 비해 원재료의 국산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간이징액환급제도는 업체가 납부한 관세액에 상관없이 수출품목별로 사전에 환급액을 고시해 환급해 주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국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관세환급을 더 받게 된다.

---

3) 「관세환급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종류

우리나라 관세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만큼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개별환급제도가 가장 일반적인 관세환급제도이다. 이와 달리 정액환급제도는 수출금액에 비례해서 일정한 금액을 관세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액환급제도는 정확한 환급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금액보다 관세환급액이 언제나 과소 또는 과다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부정확한 방법임에도 정액환급제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별환급에 따라 환급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가. 개별환급제도

#### 1) 제도 개요

개별환급제도는 관세환급제도가 시작된 197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납부한 관세 세액을 확인하여 관세를 다시 환급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별환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납부한 관세액만큼 다시 관세를 환급받는 합리적 제도이다.

#### 2) 문제점

개별환급제도는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이기에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환급제도는 정확성을 갖기 위해 제도 자체가 복잡해지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개별환급은 수출사실, 소요 원재료, 그리고 납부세액 등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한다. 수출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는 소요량증명서에 의해, 그리고 수입 원재료에 대한 납부 세액은 소요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관세환급액을 산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환급제도 자체가 복잡해지고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FTA가 확대되면서 과다 환급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FTA 확대로 동일한 품목에도 여러 가지의 관세율이 있고, 또한 동일한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최종재를 동시에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용에는 높은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내수용에는 FTA 특혜세율을 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과다 환급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간의 대체환급이 아닌 관세율이 상이한 수입 원재료 간의 대체환급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제IV장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나. 정액환급제도

### 1) 제도 개요

정액환급제도는 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복잡하고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개별환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액환급제도 중에서도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사전에 수출품목별로 환급액을 정부에서 지정하고 해당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재료의 관세 납부액 확인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소규모 수출업자들에게 수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관세환급이 소액인 경우, 이러한 소액의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개별환급을 이용하여 행정비용을 지불한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수출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운영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2014년 현재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품목 수는 4,260개로, 1990년 초까지 1,000여 개 수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수를 정비하고 축소하였다. 당시에는 간이정액환급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과 관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로 활용해 생산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대상 품목을 대폭 정리하였다. 하지만 2004년 개선 작업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적용 품목이 확대되는 만큼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다양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신규 대상 품목은 매년 세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품목 중에서 과다 환급 우려가 없는 품목에 한해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반영하고 있다.

〈표 II-1〉 간이정액환급 적용품목 수

(단위: 개)

	1986	1992	1996	1997	1998	2003	2004	2009	2012	2014
품목 수	506	1,002	1,398	2,369	3,068	3,737	3,028 (2,903) <sup>1)</sup>	3,867	4,091 (4,119) <sup>2)</sup>	4,260

주: 1) 2004년 6월 이후

2) 2012년 7월 이후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별로 나와 있는 수치와 관세청 보도자료(2014.1.13.)를 이용하여 저자가 표로 정리함.

정재호(2013), p. 68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 2) 문제점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은 평균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과소 또는 과다 환급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이 적은 중소기업들이 환급비용으로 인해 환급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수출을 줄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된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간

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에 이용된 원재료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국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FTA가 확산되면서 국산 원재료 대신 FTA 특혜세율을 받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도 더 많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 원재료보다는 대부분 무세(0%)인 FTA 특혜세율을 받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간이정액환급의 장점인 국산화 촉진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FTA 확대라는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3. 관세환급제도 운용 현황<sup>4)</sup>

#### 가. 전체 관세환급 운용 추이<sup>5)</sup>

우리나라의 전체 관세환급액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은 2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지만, 2008년 이후 관세환급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에 3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관세환급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2013년에는 이러한 빠른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FTA가 발효되어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의 관세환급액 증가는 관세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별환급액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환급액보다 규모가 작지만 간이정액환급액도 역시 2007년까지는 약 1,4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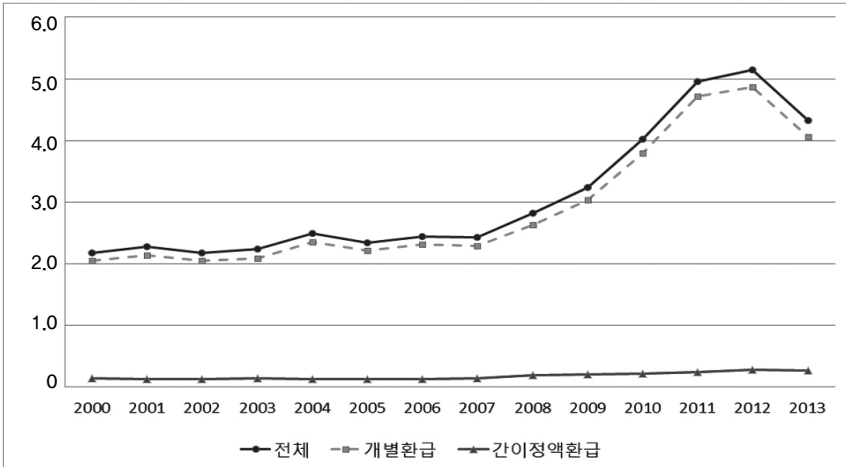
4) 이하의 내용은 정재호(2013) pp. 18~37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5)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 통관지원국 > 관세환급통계(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tId=943](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tId=943)의 자료를 이용함(검색날짜: 2014. 05. 12.)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에는 3천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간이정액환급도 역시 전체적인 관세환급 변화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관세환급액 변화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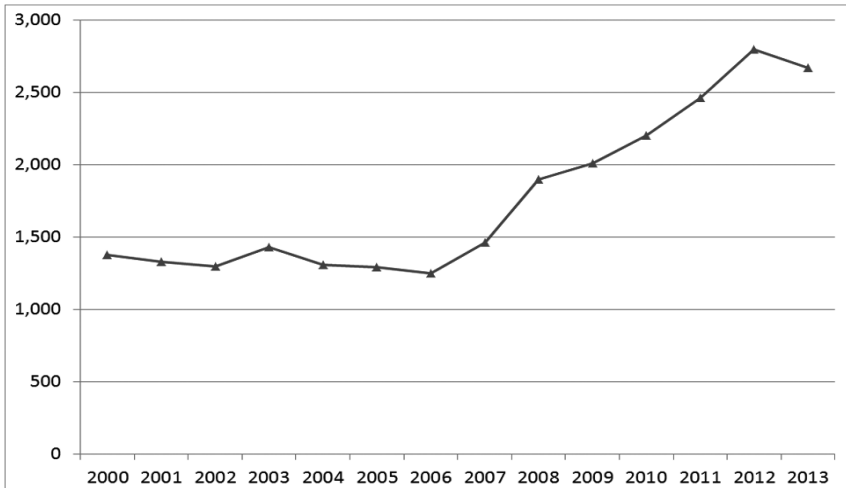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tid=943](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tid=943)

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29를 재작성함

[그림 11-2] 간이정액환급액 변화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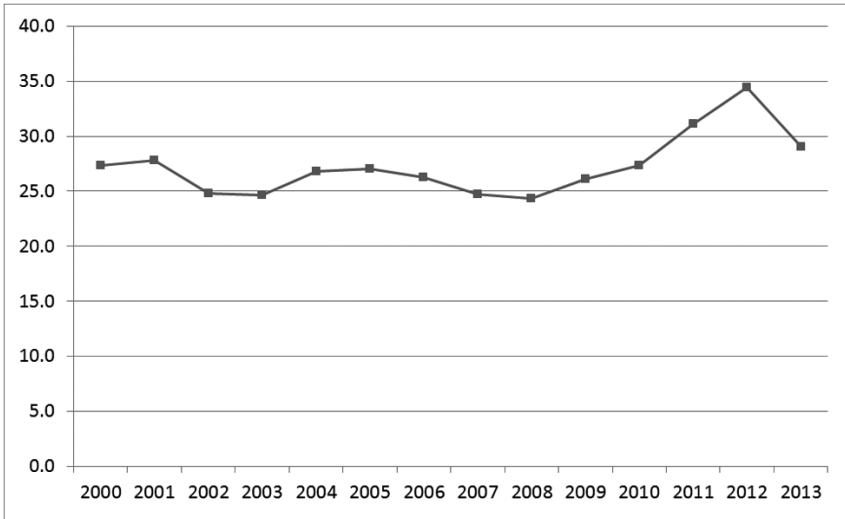
=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tlId=943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26 표를 이용해 그래프로 재작성함

관세환급액은 관세가 부과된 이후 일정금액이 환급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부가액이 증가해서 관세환급액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관세부과액 중에서 약 25~26% 정도가 관세환급액으로 다시 환급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역시 2008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관세부과액 증가로 인해 관세환급이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I-3] 관세부과액 대비 관세환급 변화

(단위: %)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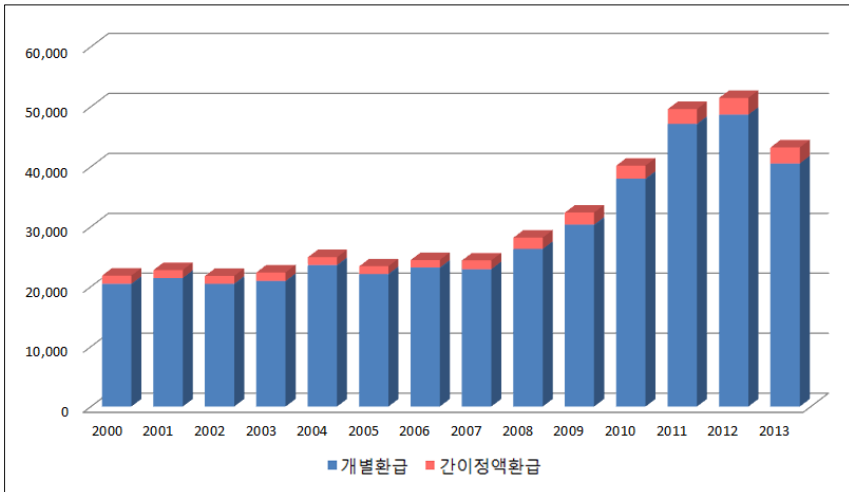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34#quick\\_0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34#quick_0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하여 그래프로 작성(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 (2013), p. 31을 참고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 나. 개별환급과 정액환급 운용 추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개별환급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개별환급액이 약 94%를 차지하고, 간이정액환급액은 약 6%로 미미하다.

[그림 11-4] 개별환급액과 간이정액환급액 규모 비교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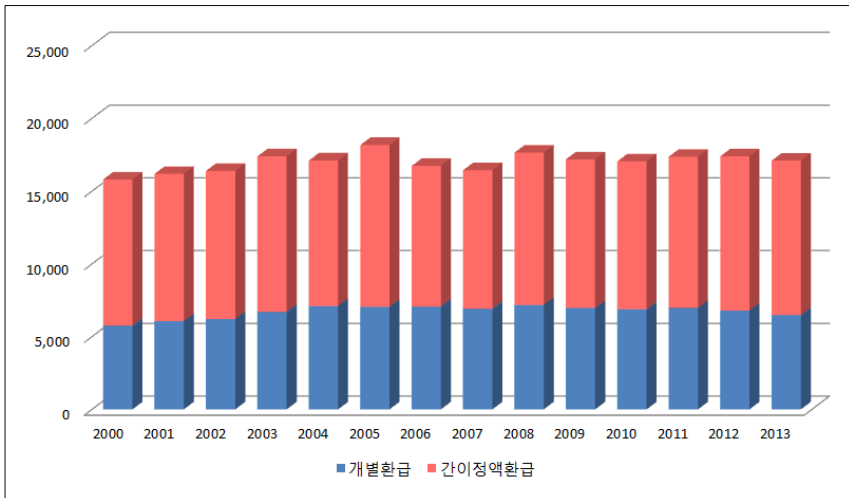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

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35와 정재호(2014), p. 31을 참고해 저자가 재작성함

관세환급액수와 달리 개별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업체 수보다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더 많다.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약 60% 정도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며 약 40% 업체가 개별환급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11-5]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수 비교

(단위: 개)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37과 정재호(2014), p. 31을 참고해 저자가 재작성함

### 1) 개별환급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은 약 4.3조원이다. 전체 4.3조원 중에서 개별환급제도에 의한 관세환급액은 약 4.1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개별환급이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94% 정도이다. 개별환급제도에 의한 환급액은 2000년 약 2.0조원에서 2009년 약 3.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2012년에는 4.9조원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 개별환급액은 2010년에 비해 약 1조원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수는 2013년에 17,097개이고, 이 중에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7,858개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비중은 2006년 53.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13년에는 전체 환급 이용 업체 중에서 46.0%가 개별환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수도 감소하고 있다. 개별환급을 이용한 수출업체는 지난 2003년 이후 8,000여 개가 훨씬 넘었지만, 2013년에는 7,858개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 개별환급을 이용한 수출업체가 9,429개임을 감안할 때 2013년에는 이용 업체가 1,571개 감소한 것이다.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수와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건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약간씩 변하고 있다.

〈표 II-2〉 개별환급 및 전체 환급실적 비교

(단위: 개, 억원, %)

	개별환급						전체 환급 실적		
	업체 수		건수		환급액		업체수	건수	환급액
		비중		비중		비중			
2000	9,429	59.7	199,174	62.2	20,459	93.7	15,802	320,098	21,834
2001	7,532	46.5	219,440	65.8	21,442	94.2	16,188	333,526	22,770
2002	7,635	46.6	217,156	66.1	20,479	94.0	16,392	328,474	21,775
2003	8,332	47.9	228,111	67.4	20,930	93.6	17,389	338,299	22,357
2004	8,847	51.7	232,656	66.5	23,586	94.7	17,098	349,728	24,895
2005	8,945	49.2	215,198	63.9	22,100	94.5	18,170	336,816	23,392
2006	8,928	53.3	215,492	68.0	23,182	94.9	16,736	317,119	24,432
2007	8,590	52.3	216,464	68.8	22,897	94.0	16,438	314,489	24,360
2008	8,881	50.3	224,711	68.0	26,276	93.3	17,644	330,597	28,175
2009	8,530	49.6	216,437	67.8	30,334	93.8	17,186	319,304	32,344
2010	8,422	49.4	222,970	67.3	37,988	94.5	17,049	331,103	40,187
2011	8,480	48.8	233,951	67.0	47,130	95.0	17,361	348,938	49,592
2012	8,187	47.1	234,458	64.5	48,671	94.6	17,391	363,588	51,469
2013	7,858	46.0	240,435	65.0	40,540	93.8	17,097	369,988	43,207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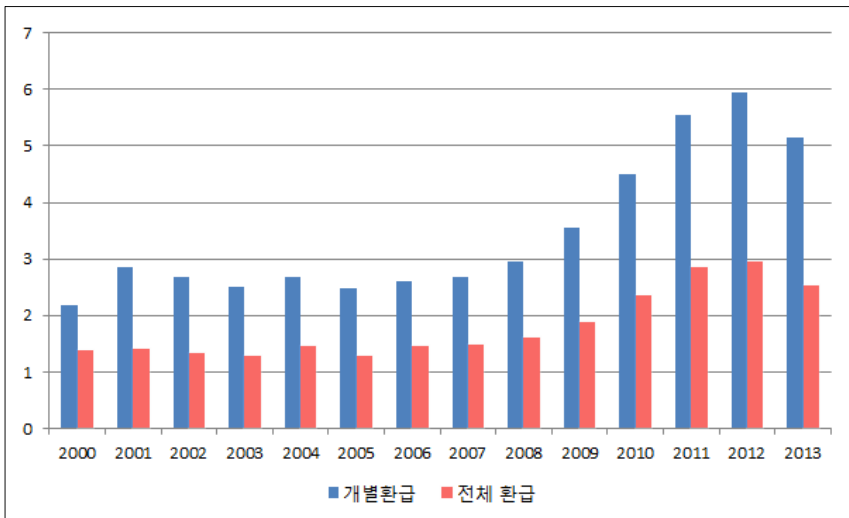
=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18을 참고해 재작성함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당 관세환급액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3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수출업체당 관세환급액은 2000년 약 2억원에

서 2012년에는 약 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약 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업체당 관세환급액이 증가하는 추세의 의미는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수보다 관세환급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II-6] 개별환급 및 전체 관세환급 업체별 환급액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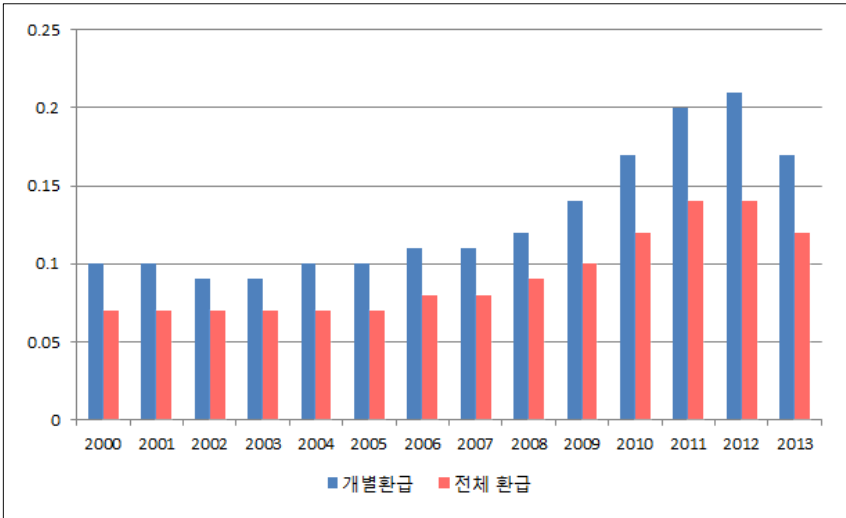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

=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tlId=943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19를 참고해 저자가 자료를 업데이트해 그래프를 재작성

개별환급 신청건당 환급액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3년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까지 개별환급 신청건당 환급액은 약 0.1 억원 수준이었으나 2007년 이후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0.2억원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환급 신청건당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관세환급 신청건당 환급액도 역시 증가하였다. 2000년 초 전체 관세환급 신청건당 환급액은 약 0.07억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0.14억원으로 2배 증가하였다.

[그림 11-7] 개별환급 및 전체 관세환급 건당 환급액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 (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tle=943](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tle=943)

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검색일자: 2014. 05. 12), 정재호(2013), p. 20을 참고해 저자가 자료를 업데이트해 그래프로 재작성

## 2) 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통한 관세환급액은 2000년~2007년까지는 약 1,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에는 2,799억원까지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약간 감소한 2,666억원의 환급이 이루어졌다.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 4.3조원이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은 2,666억원으로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약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수출업체의 수는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보다 더 많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수는 약 1만여 업체이고, 전체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간이정액환급액이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정도로 적지만,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통해 환급이 신청된 건수는 약 13만건으로 전체적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한 건수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 간이정액환급 및 전체 환급실적 비교

(단위: 개, 억원, %)

	간이정액환급						전체 환급		
	업체 수		건수		환급액		업체 수	건수	환급액
		비중		비중		비중			
2000	10,054	63.6	120,924	37.8	1,375	6.3	15,802	320,098	21,834
2001	10,120	62.5	114,086	34.2	1,328	5.8	16,188	333,526	22,770
2002	10,174	62.1	111,318	33.9	1,296	6.0	16,392	328,474	21,775
2003	10,690	61.5	110,188	32.6	1,427	6.4	17,389	338,299	22,357
2004	9,990	58.4	117,072	33.5	1,309	5.3	17,098	349,728	24,895
2005	11,126	61.2	121,618	36.1	1,292	5.5	18,170	336,816	23,392
2006	9,665	57.7	101,627	32.0	1,250	5.1	16,736	317,119	24,432
2007	9,513	57.9	98,025	31.2	1,463	6.0	16,438	314,489	24,360
2008	10,466	59.3	105,886	32.0	1,899	6.7	17,644	330,597	28,175
2009	10,222	59.5	102,867	32.2	2,010	6.2	17,186	319,304	32,344
2010	10,160	59.6	108,133	32.7	2,199	5.5	17,049	331,103	40,187
2011	10,395	59.9	114,987	33.0	2,462	5.0	17,361	348,938	49,592
2012	10,594	60.9	129,130	35.5	2,799	5.4	17,391	363,588	51,469
2013	10,620	62.1	129,553	35.0	2,666	6.2	17,097	369,988	43,207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

=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tle=943(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27을 참고해 재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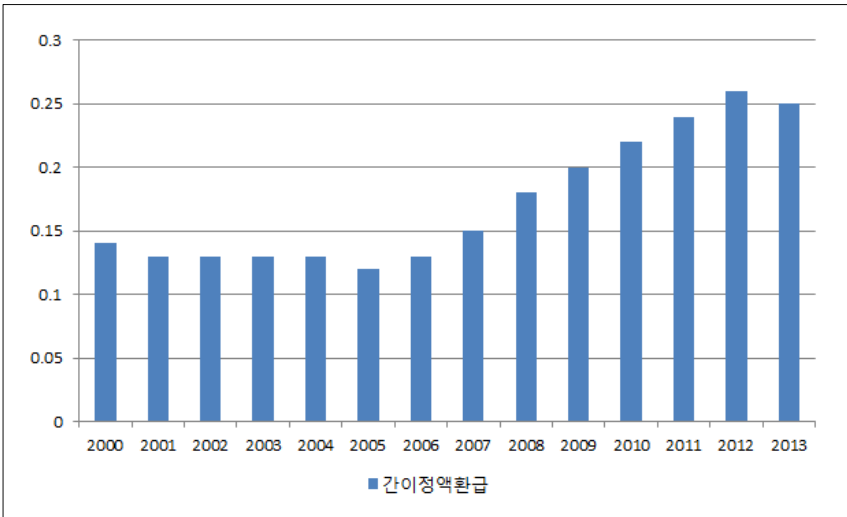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업체당 환급액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0.15억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부터 증가하여 2012년에는 0.26억원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0.2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수출업체당 전체 관세환급액과 비교해 보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업체당 환급액이 전체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업

체당 환급액의 약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는 약 1만여 개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간이정액환급액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수출업체당 간이정액환급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8] 간이정액환급 업체당 환급액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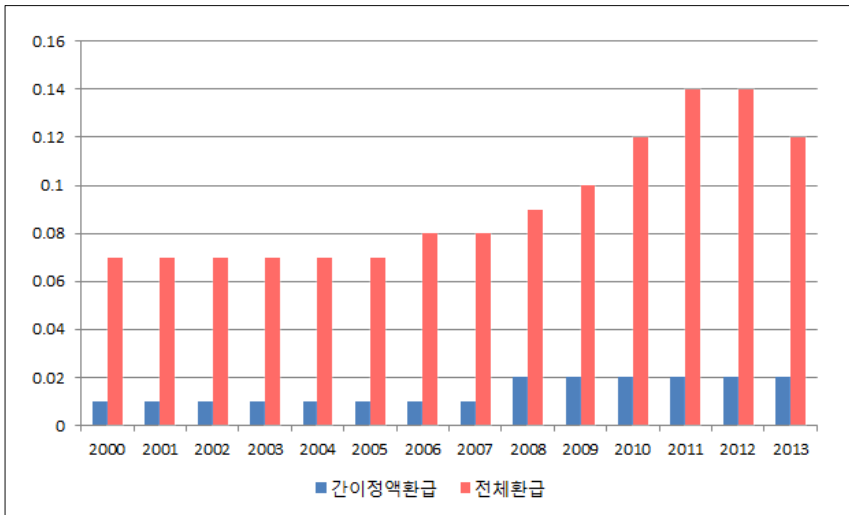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

=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tle=943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27을 참고해 저자가 업데이트하여 그래프로 재작성함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건당 환급액은 지난 2000년~2007년까지는 약 1백만원이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약 2백만원 정도로 상승하였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 규모도 커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건당 환급액은 전체 관세환급 신청건당 금액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급에 제한이 없는 개별환급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림 11-9] 간이정액환급 및 전체 관세환급 건당 환급액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통관지원국>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72&bbsId=BBSMSTR_1032&bcode=003&ntId=943)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검색날짜:

2014. 05. 12), 정재호(2013), p. 28 표를 참고하여 저자가 업데이트하여 그래프를 재작성함

---

## Ⅲ. 관세환급제도 활용 및 효과분석

---

본 장에서는 기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한 관세환급실적 자료<sup>6)</sup>를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별, 산업별, 업체 규모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1. 관세환급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 가. 환급신청 업체 규모별 통계분석

##### 1) 관세환급제도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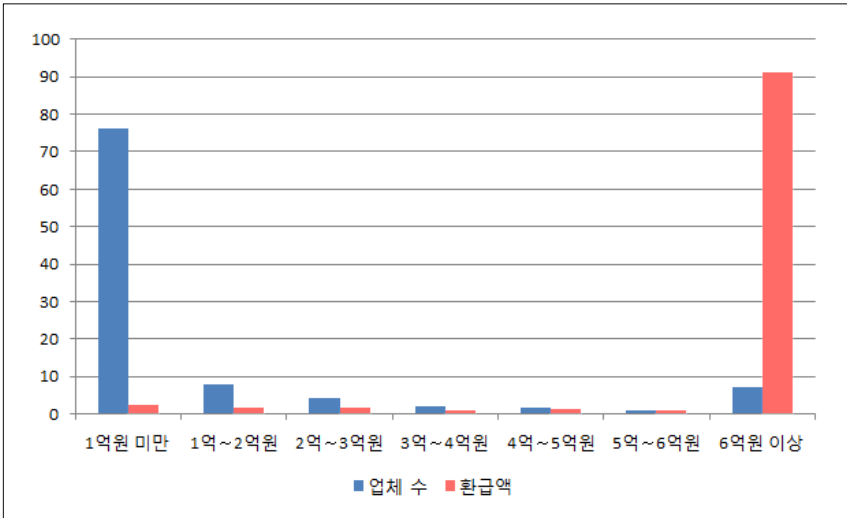
2013년 기준으로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한 업체들 중에서 관세환급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한 업체 중에서 약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의 수는 절대적으로 많지만 관세환급액이 작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의 2.3%만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환급액의 대부분은 환급액이 6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받아 가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

6) 관세청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관세환급실적(2001~2013)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함

[그림 III-1] 개별환급액 규모별 업체 수 및 환급액 비중(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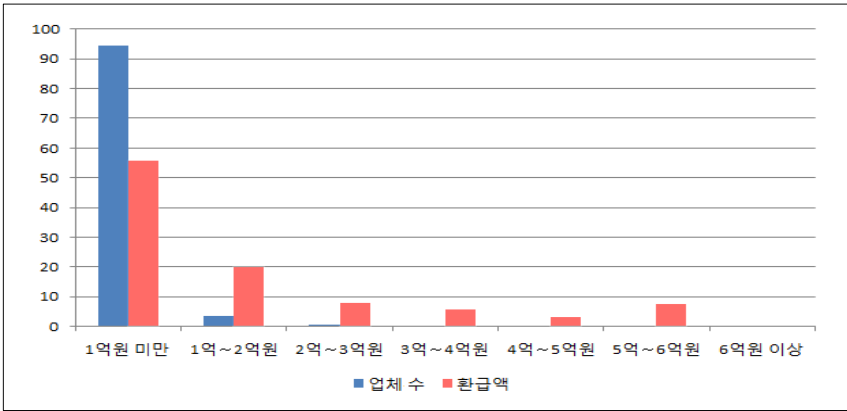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인 것처럼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의 약 95%가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였다. 즉,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이들 업체들의 관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로 나타났다. 관세환급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들의 수는 적지만 이들 업체의 환급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III-2] 간이정액환급액 규모별 업체 수 및 환급액 비중(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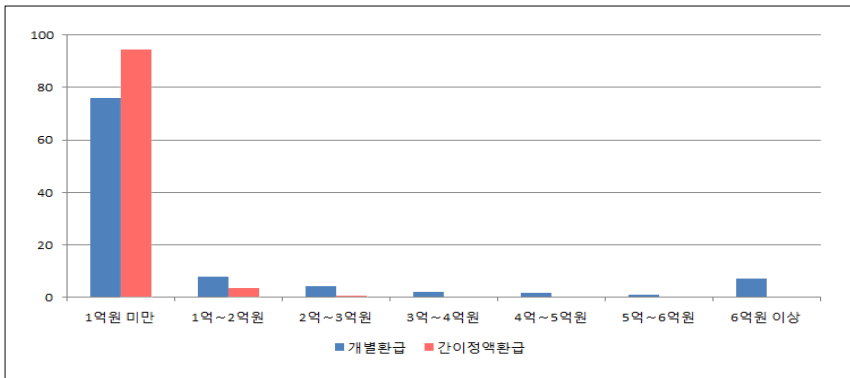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 2) 환급제도별 비교분석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업체들의 환급실적을 보면, 주로 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이다. 2013년 기준으로 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업체를 살펴보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전체의 약 95%이고,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한 경우가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I-3] 환급제도별 업체 수 비중(2013년)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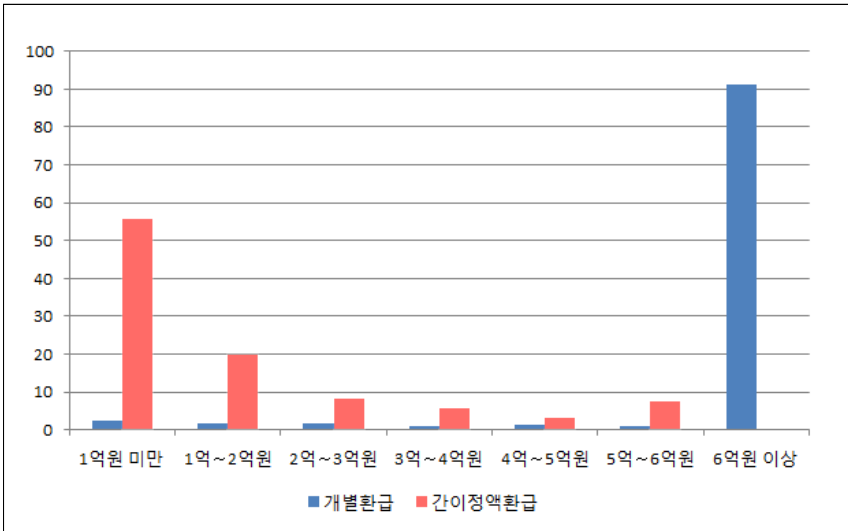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평균 환급액은 각각 약 6억원과 약 0.25억원으로 개별환급이 더 많았다.

하지만 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의 업체당 환급액을 비교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약 1,900만원이고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도 약 1,500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의 업체들의 관세환급액이 전체 개별환급액의 약 9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액 1억원 미만의 업체의 환급액이 약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별환급 실적이 1억~6억원 사이인 업체들의 구간별 환급액 비중은 1~2%를 보이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실적이 5억~6억원 사이인 업체들의 환급액 비중이 약 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환급실적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림 III-4] 환급제도별 환급액 비중(2013년)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 나. 환급제도별 변화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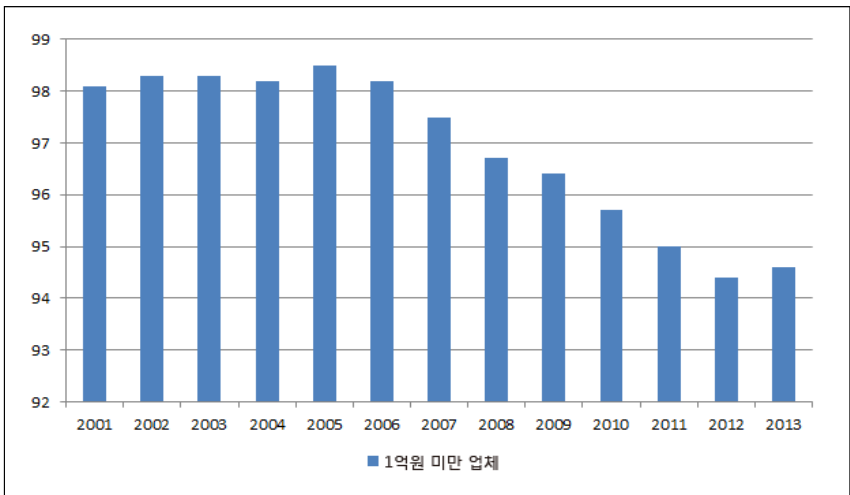
### 1)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수 및 수출액 변화

관세환급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세환급을 이용한 업체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들 중에서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2006년까지는 약 98% 정도였지만, 2007년 이후 감소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94%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업체당 간이정액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관세환급액이 1~2억원인 업체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즉, 2007년 이후부터는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이들 업체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 III-5]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수 비중(1억원 미만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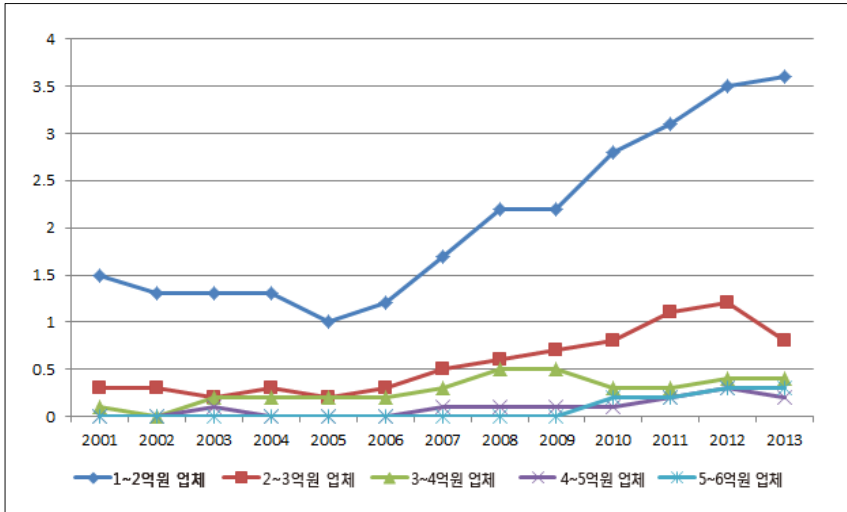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정재호(2013), p. 45, pp. 121~122를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그림 III-6]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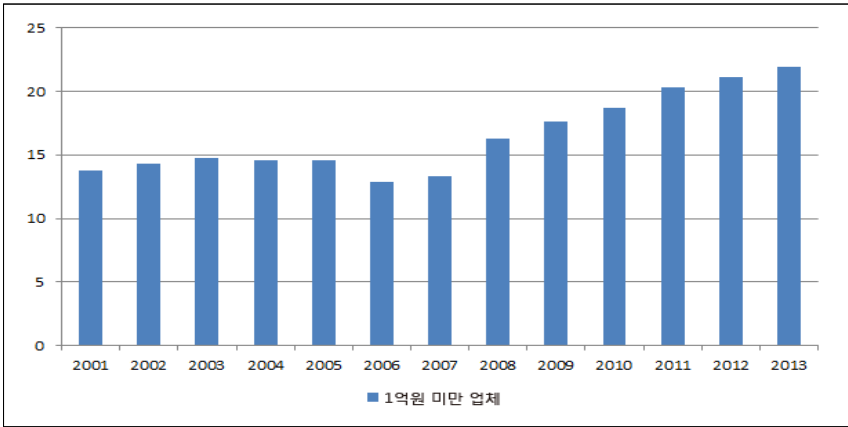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정재호(2013), p. 45, pp. 121~122를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들 중에서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들의 수출액이 2007년까지는 약 15조원 미만이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20조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세환급액이 1~2억원인 업체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들 업체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림 III-7] 간이정액환급 적용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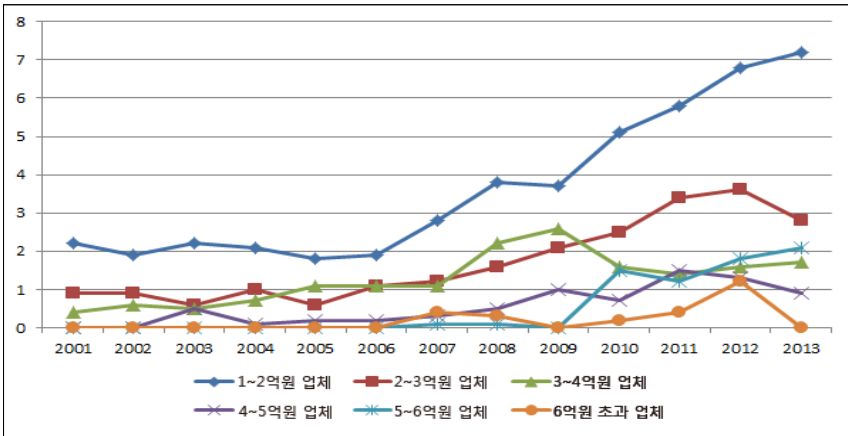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정재호(2013), p. 47, pp. 125~126을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그림 III-8] 간이정액환급 적용 수출액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정재호(2013), p. 47, pp. 125~126을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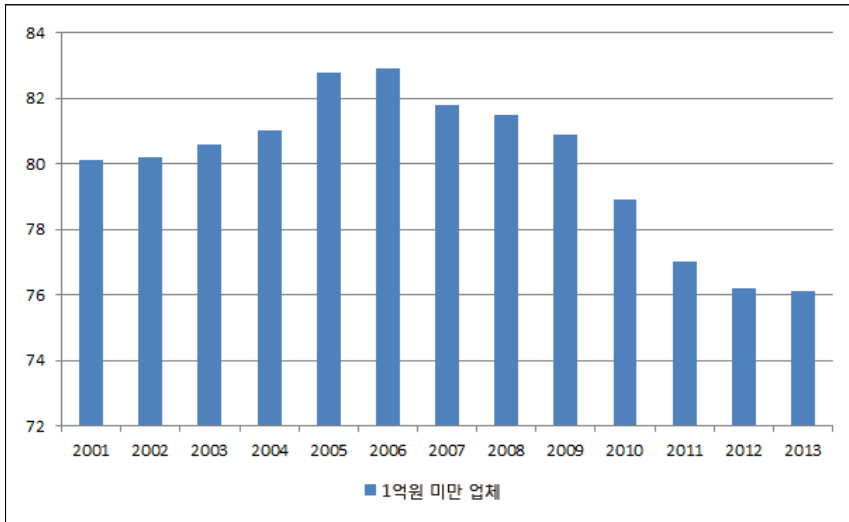
## 2) 개별환급 이용 업체 수 및 수출액 변화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들 중에서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2000년 초에는 약 80%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83%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약 76%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개별환급액 1억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그 이상의 환급을 받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관세환급액이 2~3억원인 업체와 6억원 이상인 업체의 비중 증가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다.

[그림 III-9] 개별환급 이용 업체 수 비중(1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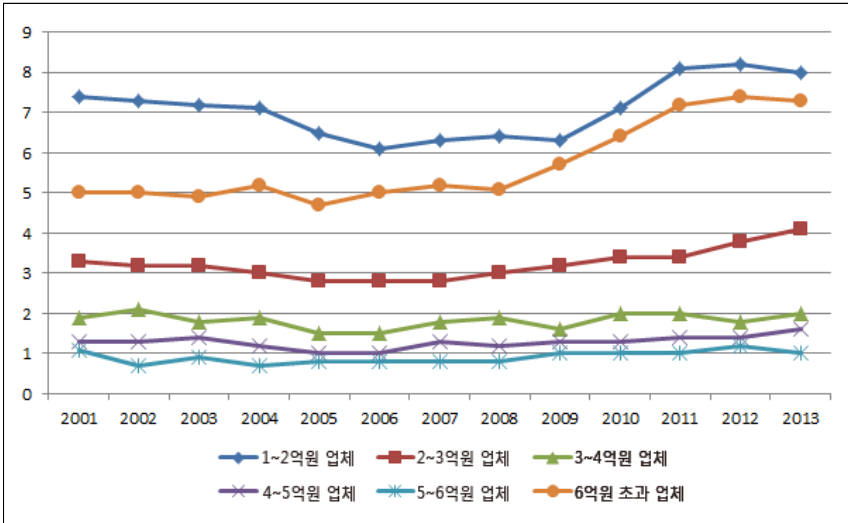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정재호(2013), p. 44, pp. 120~121을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그림 III-10] 개별환급 이용 업체 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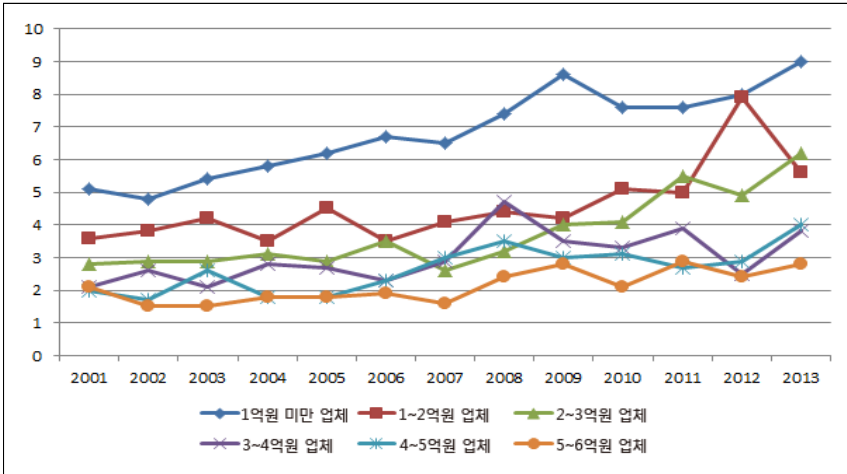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정재호(2013), p. 44, pp. 120~121을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개별환급을 적용받아 수출되는 수출액은 대부분 증가 추세에 있다. 관세 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관세환급액이 1~5억원 사이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가 더 크다.

특히, 관세환급액이 6억원 이상인 업체들의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은 수출액이 2001년에는 약 100조원 이었는데 2004년에 200조원을 넘긴 이후 2011년 300조원, 그리고 2013년에는 약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환급액 규모가 큰 업체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세환급액도 동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추후 산업별 분석에서 논의하겠지만, 석유제품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다.

[그림 III-11] 개별환급 적용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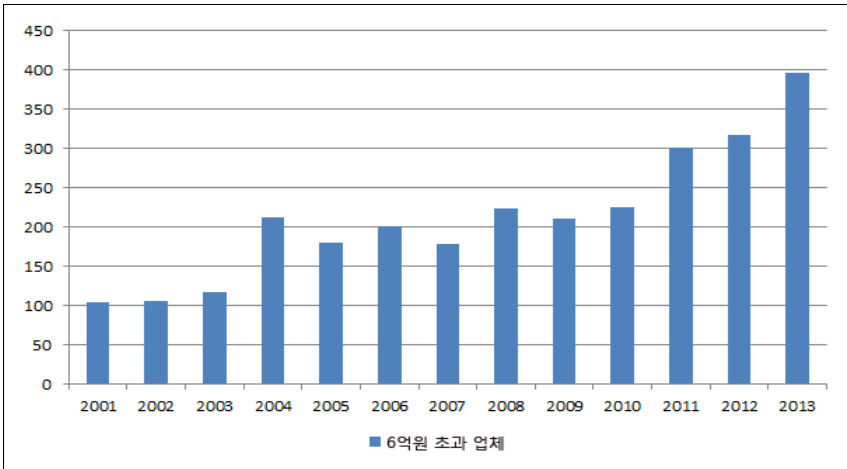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정재호(2013), p. 47, pp. 125~126을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그림 III-12] 개별환급 적용 수출액(6억원 초과)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정재호(2013), p. 47, pp. 125~126을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재작성함

## 다. 산업별 관세환급액 비교 분석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환급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관세환급자료를 산업별로 구분하였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분류 기준의 산업 분류 기준으로 관세환급을 받은 수출재를 이 대분류 산업군에 매칭하는 작업을 통해 산업별로 관세환급 규모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관세환급 자료는 2013년과 2012년을 사용하였으며, 이 2개년도를 함께 비교한 이유는 앞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이 2012년에 정점을 이룰 정도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 2013년에는 약간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 2개년도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 1) 산업별 관세환급액 비교

산업별 관세환급액을 비교해보면,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많다. 2013년 기준으로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액은 1조 6,892억원이다. 2012년에도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액이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환급액도 가장 많았다.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이지만 관세환급은 대부분 석유제품 수출에 따른 원유의 관세 환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 다음으로 관세환급액이 많은 산업은 화학제품으로 7,171.8억원이다.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화학제품에서도 원유에 대한 관세 환급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환급액이 5,293억원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수송장비 산업 4,541.1억원, 일반기계 산업 4,171.2억원 순서로 환급액이 많았다. 이들 5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약 80.3%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 대부분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5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약 84.9%로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환급액 감소로 그만큼 전체 관세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였다.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한 업체들 중에서는 환급액이 많은 산업을 보면, 일반기계 산업이 633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556.6억원, 화학제품 산업 400.9억원, 전기 및 전자기기 350.2억원 등으로 이들 4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간이정액환급액의 약 7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간이정액환급 수준은 2012년과 거의 동일하다.

산업별 개별환급액 분포는 전체 관세환급액과 거의 유사하다. 전체 관세환급이 대부분 개별환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100% 가까이 개별환급을 통해 관세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유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물, 광산물, 음식료품, 수송장비 등의 산업에서도 간이정액환급제도보다는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 금속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제도보다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는 금속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은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거의 반반씩 나뉘어 이용되고 있었다.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에서도 전체 관세환급에서 간이정액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산업별 관세환급액 비교(2013년)

(단위: 억원)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전체 환급
농림수산물	137.0	0.3	137.4
광산품	41.5	0.4	41.9
음식료품	2,100.7	44.4	2,145.1
섬유 및 가죽제품	1,081.4	556.6	1,637.9
목재 및 종이제품	44.5	7.5	52.0
인쇄 및 복제	1.6	0.4	2.1
석유 및 석탄제품	16,888.1	3.9	16,892.0
화학제품	6,770.9	400.9	7,171.8
비금속광물제품	405.5	25.5	431.0
제1차 금속제품	1,046.3	165.9	1,212.2
금속제품	141.7	219.0	360.7
일반기계	3,538.2	633.0	4,171.2
전기 및 전자기기	4,942.7	350.2	5,293.0
정밀기기	1,000.9	134.3	1,135.2
수송장비	4,474.4	66.7	4,541.1
기타제조업제품	293.9	57.3	351.3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표 III-2〉 산업별 관세환급액 비교(2012년)

(단위: 억원)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전체 환급
농림수산물	197.0	0.9	197.9
광산품	43.8	0.8	44.6
음식료품	1,882.9	39.6	1,922.5
섬유 및 가죽제품	1,214.8	575.0	1,789.8
목재 및 종이제품	43.1	11.2	54.3
인쇄 및 복제	1.6	0.3	1.9
석유 및 석탄제품	20,454.0	4.4	20,458.5
화학제품	7,058.6	405.2	7,463.8
비금속광물제품	527.4	33.6	561.0
제1차 금속제품	1,179.2	188.4	1,367.6
금속제품	171.7	169.0	340.7
일반기계	3,723.4	673.8	4,397.2
전기 및 전자기기	5,681.1	402.8	6,083.9
정밀기기	1,056.1	148.6	1,204.7
수송장비	5,224.7	84.8	5,309.5
기타제조업제품	210.6	60.4	270.9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 2) 산업별 관세환급 관련 수출액 비교

산업별로 관세 환급을 적용받은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과 수송장비 산업의 수출액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다. 2013년 기준으로 관세를 환급받으면서 수출한 석유 및 석탄제품은 126.8조 원이고, 수송장비의 수출액은 94.6조원이다. 그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액이 83.4조원이었다. 이들 3개 산업의 관세환급 수출액이 전체 관세환급 수출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화학제품 산업의 수출액 48.6조원을 포함시키면 전체 관세환급 수출액의 79.7%로 이들 4개 산업의 관세환급 수출액이 전체 관세환급 수출액의 거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석유 및 석탄제품,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그리고 화학제품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관세환급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관세환급을 이용한 수출액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도 이들 4개 산업의 관세환급 수출액이 전체 관세환급 수출액의 74.6%를 차지하였다. 2013년에는 이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서 수출한 경우에는 일반기계 산업의 관세환급 수출액이 10.1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액이 5.7조원,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수출액이 5.4조원으로 일반기계 산업의 수출액이 이들 산업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화학제품의 수출액 5.1조원까지 합칠 경우 이들 4개 산업의 관세환급 수출액은 전체 간이정액환급을 통한 수출액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는 제품은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섬유 및 가죽제품, 그리고 화학제품이 4분의 3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과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산업별 환급관련 수출액 비교(2013년)

(단위: 억원)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전체 환급
농림수산물	543.7	84.0	627.7
광산품	3,267.3	34.9	3,302.2
음식료품	28,849.0	3,661.5	32,510.5
섬유 및 가죽제품	45,958.2	53,594.9	99,553.1
목재 및 종이제품	20,720.8	2,868.5	23,589.2
인쇄 및 복제	221.6	111.4	333.1
석유 및 석탄제품	1,267,680.7	311.9	1,267,992.6
화학제품	607,245.3	51,232.1	658,477.4
비금속광물제품	31,695.6	3,359.4	35,055.0
제1차 금속제품	245,024.8	20,547.0	265,571.8
금속제품	20,802.0	35,480.3	56,282.4
일반기계	258,589.5	100,973.5	359,563.0
전기 및 전자기기	777,896.8	56,563.9	834,460.8
정밀기기	38,058.3	15,821.6	53,879.9
수송장비	931,564.9	14,322.9	945,887.8
기타제조업제품	5,750.1	7,367.6	13,117.7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표 III-4〉 산업별 환급관련 수출액 비교(2012년)

(단위: 억원)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전체 환급
농림수산물	2,062.6	138.6	2,201.2
광산품	2,480.7	71.4	2,552.0
음식료품	32,570.0	2,843.1	35,413.1
섬유 및 가죽제품	46,907.1	55,840.8	102,747.9
목재 및 종이제품	22,242.1	3,204.3	25,446.4
인쇄 및 복제	265.5	75.3	340.8
석유 및 석탄제품	844,122.4	313.0	844,435.5
화학제품	586,918.0	48,802.9	635,721.0
비금속광물제품	13,321.6	3,731.7	17,053.3
제1차 금속제품	263,060.8	23,798.3	286,859.1
금속제품	19,231.6	29,096.8	48,328.4
일반기계	282,321.4	100,803.1	383,124.6
전기 및 전자기기	421,312.7	64,495.2	485,808.0
정밀기기	37,864.7	16,710.7	54,575.4
수송장비	871,912.9	16,945.2	888,858.1
기타제조업제품	5,401.1	7,382.6	12,783.7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2013년 기준으로 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약 1.0%이고,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약 0.7%로 나타나 전체 관세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나타났다. 이를 2012년과 비교해 보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약 0.7%로 2013년도와 동일하였지만,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약 1.4%로, 2013년에는 전체 관세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의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간이정액환급보다 높은 것은 타당하다. 개별환급은 원재료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지급받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환급액이 간이정액환급액보다 많은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별 산업별로 보면, 이와 반대로 간이정액환급의 수출액 대비 환급률이 개별환급보다 높은 산업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간이정액환급에서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2012년과 2013년 모두 높게 나와 제1차 금속제품 산업과 관련된 간이정액환급 품목의 환급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품의 경우 관세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음식료품으로 관세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높았다. 개별환급을 기준으로 보면 이 비중이 더 높아 농림수산품의 경우에는 25.2%, 음식료품은 7.3%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수출액에서 관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농림수산품의 관세가 높아 그만큼 관세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산업은 FTA 이후에도 FTA 협정세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추후에도 관세환급액이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개별환급에서 평균 수출액 대비 환급률이 높은 산업으로는 기타 제조업제품 산업이 5.1%, 정밀기기 산업 2.6%,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이 2.4%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관세가 부과된 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들 산업들의 환급률이 추후에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FTA를 통한 원재료 수입을 더 권장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산업에서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별환급이 많은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과 수송장비 산업의 경우에는 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와 0.5%로 나타났다. 수송장비 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2012년에는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았는데, 2013년에는 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및 종이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액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2%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액에서 관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른 산업들에 비해 수출액에서 관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음식료품과 석유 및 석탄제품으로 그 비중이 각각 1.2%와 1.3%였다.

농림수산물 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에서는 수출액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5.2%로 높았지만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액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4%로 낮아져, 그 차이가 매우 컸다.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농림수산물 산업의 경우에는 과소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표 III-5〉 산업별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 비교(2013년)

(단위: %)

	개별환급(A)	간이정액환급(B)	전체 환급	차이(A-B)
농림수산물	25.2	0.4	21.9	24.8
광산품	1.3	1.1	1.3	0.1
음식료품	7.3	1.2	6.6	6.1
섬유 및 가죽제품	2.4	1.0	1.6	1.3
목재 및 종이제품	0.2	0.3	0.2	0.0
인쇄 및 복제	0.7	0.4	0.6	0.4
석유 및 석탄제품	1.3	1.3	1.3	0.1
화학제품	1.1	0.8	1.1	0.3
비금속광물제품	1.3	0.8	1.2	0.5
제1차 금속제품	0.4	0.8	0.5	-0.4
금속제품	0.7	0.6	0.6	0.1
일반기계	1.4	0.6	1.2	0.7
전기 및 전자기기	0.6	0.6	0.6	0.0
정밀기기	2.6	0.8	2.1	1.8
수송장비	0.5	0.5	0.5	0.0
기타제조업제품	5.1	0.8	2.7	4.3
전체	1.0	0.7	1.0	0.3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표 III-6〉 산업별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 비교(2012년)

(단위: %)

	개별환급(A)	간이정액환급(B)	전체 환급	차이(A-B)
농림수산물	9.6	0.6	9.0	8.9
광산품	1.8	1.1	1.7	0.6
음식료품	5.8	1.4	5.4	4.4
섬유 및 가죽제품	2.6	1.0	1.7	1.6
목재 및 종이제품	0.2	0.3	0.2	- 0.2
인쇄 및 복제	0.6	0.4	0.6	0.2
석유 및 석탄제품	2.4	1.4	2.4	1.0
화학제품	1.2	0.8	1.2	0.4
비금속광물제품	4.0	0.9	3.3	3.1
제1차 금속제품	0.4	0.8	0.5	- 0.3
금속제품	0.9	0.6	0.7	0.3
일반기계	1.3	0.7	1.1	0.7
전기 및 전자기기	1.3	0.6	1.3	0.7
정밀기기	2.8	0.9	2.2	1.9
수송장비	0.6	0.5	0.6	0.1
기타제조업제품	3.9	0.8	2.1	3.1
전체	1.4	0.7	1.3	0.7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산업별로 관세환급을 받아 수출한 금액이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 중 어느 제도를 더 이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개별환급제도에 의한 수출액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 수출액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구체적으로 개별환급제도에 의한 수출액과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한 수출액의 비율은 대략 90:10 정도로 개별환급에 의한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개별 산업별로 보면, 금속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그리고 기타제조업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보다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서 수출된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기기, 일반기계, 인쇄 및 복제 등도 간이정액환급을 통한 수출액 비중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이

정액환급을 통한 수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산업별 환급관련 수출액 비중 비교(2013년)

(단위: %)

	개별환급(A)	간이정액환급(B)	차이(A-B)
농림수산물	86.6	13.4	73.2
광산품	98.9	1.1	97.9
음식료품	88.7	11.3	77.5
섬유 및 가죽제품	46.2	53.8	-7.7
목재 및 종이제품	87.8	12.2	75.7
인쇄 및 복제	66.5	33.4	33.1
석유 및 석탄제품	100.0	0.0	100.0
화학제품	92.2	7.8	84.4
비금속광물제품	90.4	9.6	80.8
제1차 금속제품	92.3	7.7	84.5
금속제품	37.0	63.0	-26.1
일반기계	71.9	28.1	43.8
전기 및 전자기기	93.2	6.8	86.4
정밀기기	70.6	29.4	41.3
수송장비	98.5	1.5	97.0
기타제조업제품	43.8	56.2	-12.3
전체	92.1	7.9	84.2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표 III-8〉 산업별 환급관련 수출액 비중 비교(2012년)

(단위: %)

	개별환급(A)	간이정액환급(B)	차이(A-B)
농림수산물	93.7	6.3	87.4
광산품	97.2	2.8	94.4
음식료품	92.0	8.0	84
섬유 및 가죽제품	45.7	54.3	-8.6
목재 및 종이제품	87.4	12.6	74.8
인쇄 및 복제	77.9	22.1	55.8
석유 및 석탄제품	100.0	0.0	100
화학제품	92.3	7.7	84.6
비금속광물제품	78.1	21.9	56.2
제1차 금속제품	91.7	8.3	83.4
금속제품	39.8	60.2	-20.4
일반기계	73.7	26.3	47.4
전기 및 전자기기	86.7	13.3	73.4
정밀기기	69.4	30.6	38.8
수송장비	98.1	1.9	96.2
기타제조업제품	42.2	57.8	-15.6
전체	90.2	9.8	80.4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산업별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업체 수를 보면,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화학제품 산업의 수출업체가 1,98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과 일반기계 산업의 약 1,500여 개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이용하였으며,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1,341개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이용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수를 보면, 일반기계 산업의 수출업체가 3,00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수출업체가 2,626개, 화학제품의 수출업체 2,213개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업별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제도를 같이 이용하는 업체가 가장 많

은 산업은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으로, 110개 업체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으로 유리한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기계 산업에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도 96개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과 화학제품 산업에서도 각각 76개와 62개 업체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한해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업체는 약 1만 7,000여 개 업체이다. 그리고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가 7,262개 업체이다. <표 Ⅲ-9>에서 개별환급을 이용한 업체가 9,737개인 이유는 한 업체가 다른 산업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환급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등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환급을 받고 있어 중복 카운트되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동시에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총 517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산업별 관세환급 이용 업체 수 비교(2012년)

(단위: 개)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전체 환급	중복업체
농림수산물	106	18	123	1
광산품	54	14	65	3
음식료품	547	211	751	7
섬유 및 가죽제품	1,341	2,626	3,857	110
목재 및 종이제품	77	155	229	3
인쇄 및 복제	5	24	29	0
석유 및 석탄제품	215	54	267	2
화학제품	1,982	2,213	4,133	62
비금속광물제품	218	201	406	13
제1차 금속제품	413	735	1,132	16
금속제품	456	1,171	1,604	23
일반기계	1,499	3,008	4,411	96
전기 및 전자기기	1,510	1,631	3,065	76
정밀기기	655	769	1,395	29
수송장비	300	458	746	12
기타제조업제품	359	609	944	24
합계	9,737	13,897	23,157	477
전체 환급이용업체	7,262	10,575	17,320	517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 라. 산업별 관세환급 실적변화 추이 분석

산업별 관세환급액 변화 추이를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관세환급액은 200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 약 2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5조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별 관세환급액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별 개별환급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산업들의 환급액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III-13]에서 보듯이, 개별환급액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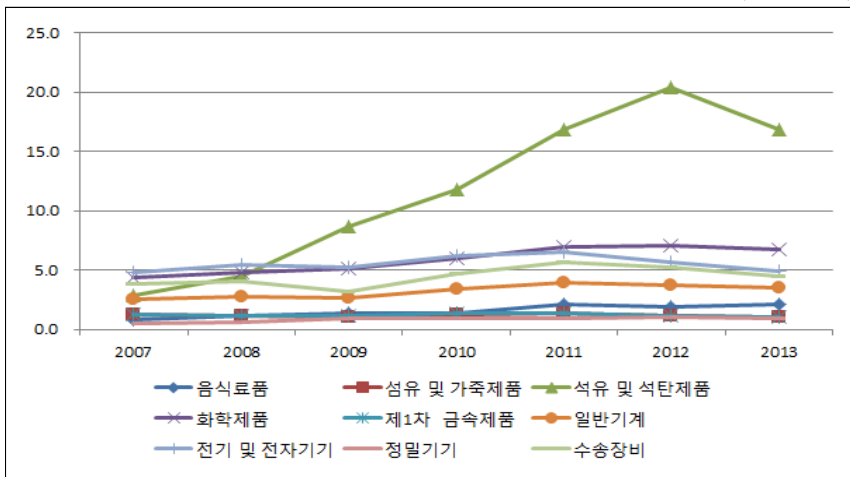
나는 산업은 바로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석탄 수출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석유제품 산업의 개별환급 증가가 우리나라 관세환급액 증가의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석유제품 산업의 2007년도 개별환급액은 약 2,800억원인데 2012년에는 약 2조원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사이에 개별환급액이 약 1.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동일한 기간 동안에 화학제품 산업에서 약 2,000억원 이상, 그리고 일반기계,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약 1,000억원 정도의 개별환급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이 2007년 이후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III-13] 산업별 개별환급액 추이

(단위: 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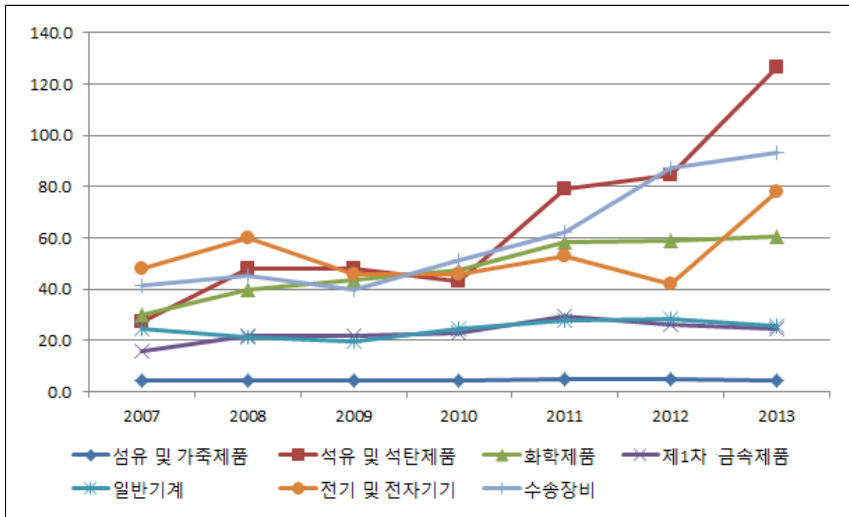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이처럼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개별환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수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 증가도 눈에 띈다. 수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 증가 정도에 비해 개별환급액 증가가 덜한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산업별로 수출액 대비

관세환급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관세가 부과된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가 주요한 요소이다. 앞선 표에서 보았듯이, 수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각각 0.5%와 0.6%이었지만,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1.3%로 이들 산업들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림 III-14] 산업별 개별환급 관련 수출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개별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비율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세를 부담하고 수입하는 원재료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일수록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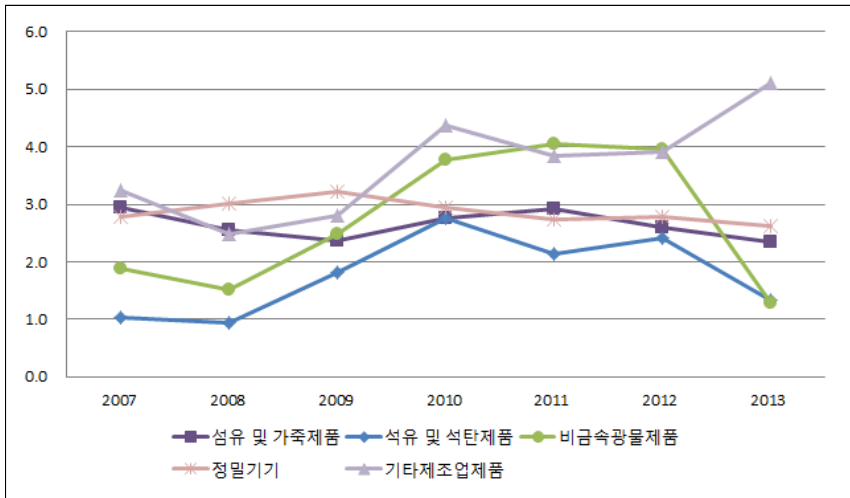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산업이 대표적으로 개별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환급 비율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평균 약 23%의 수준이다.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농림수산물의 관세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FTA 체결 이후에도 관세 부담이 제조업

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환급 비율이 다른 산업처럼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중에서 관세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으로 기타제조업제품 산업을 비롯해서 석유제품 산업, 정밀기기 산업, 비금속광물제품,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등이 있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관세가 부과된 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들 산업들의 환급률이 추후에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FTA를 통한 원재료 수입을 더 권장하면서 사전면세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III-15] 수출액 대비 개별환급비율 추이(평균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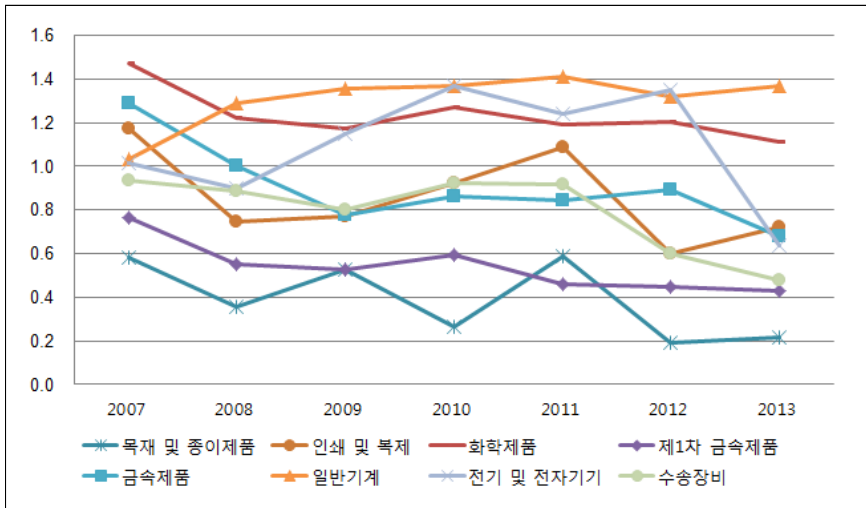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그림 III-16] 수출액 대비 개별환급비율 추이(평균 이하)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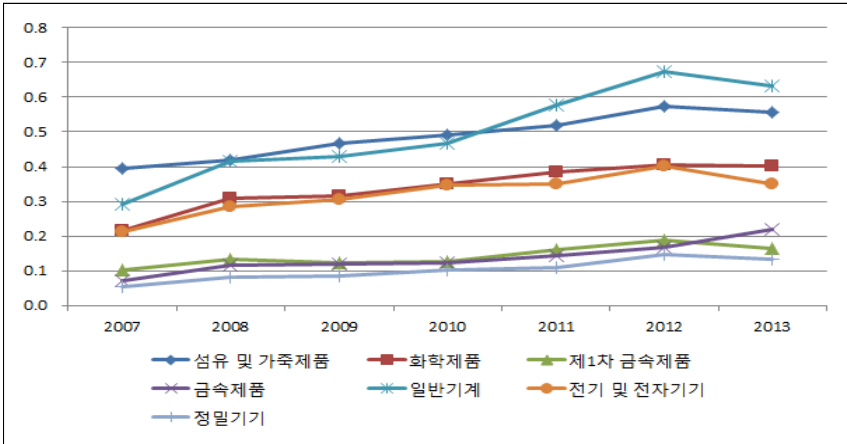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산업만을 대상으로 추세를 살펴보았다. 개별환급액과 달리 간이정액환급액은 그만큼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간이정액환급액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산업은 일반기계 산업이다. 일반기계 산업의 간이정액환급액은 2007년 약 300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670억원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산업 중에서 증가액이 가장 컸다. 동일한 기간 동안 간이정액환급액이 크게 증가한 산업으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등으로 약 2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간이정액환급액도 지난 2007년 이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증가액이 개별환급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의 증가는 개별환급액에 증가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특히 석유제품 산업의 개별환급액 증가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I-17] 산업별 간이정액환급액 추이

(단위: 천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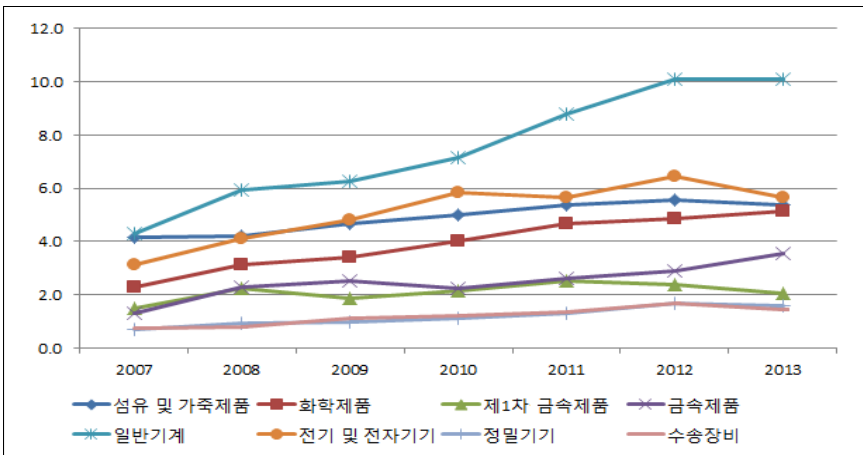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일반기계 산업의 환급액 증가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기계 산업의 환급 관련 수출액 변화를 보면, 수출액 증가로 인해 간이정액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8] 산업별 간이정액환급 관련 수출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 2.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효과

관세환급의 주된 목적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또한, 관세환급은 부수적으로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세환급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세환급의 수출 효과 및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 효과 등을 추정하고 관세환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해 관세환급으로 인한 원재료의 국산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관세청의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사용하여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의 효과를 추정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세환급 실적자료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개별환급액, 간이정액환급액, 수출액, 수입원재료의 관세율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사용하여 본 소절에서는 관세환급 종류별, 산업별, 그리고 업체규모별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 가. 관세환급 종류별·산업별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분석

관세환급은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환급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관세환급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당히 복잡하고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간이정액환급은 반대로 제도적 절차는 간단하지만 과다 환급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출업체는 관세환급의 이득과 관세환급 신청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크기 등을 비교하여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은 그 특성상 중소기업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관세환급 종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출업체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관세환급의 수출 효과가 관세환급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출과 관세환급은 산업별로 그 규모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개별환급에서는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간이정액환급에서는 석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유가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상당히 낮다. 오히려 간이정액환급에서는 개별환급과 달리, 금속제품 산업에서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보여주듯 산업별로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사용하여 관세환급 종류별·산업별로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관세환급은 수출에 대한 기업의 관세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세환급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FTA가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 생략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로 인해,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는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여 발효하였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들과 꾸준히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FTA가 발효된 국가/연합국가 수는 9개국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와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용 원재료를 포함한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낮아지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FTA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관세율을 사용하였다.<sup>7)</sup> 다음의 [그림 Ⅲ-19]와 [그림 Ⅲ-20]에서는 각각 개별환급과 간

7)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실효세율 변수는 개별 수출업체가 납부한 관세금액을

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업체들의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평균 관세율은 환급제도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별환급에서의 관세율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 관세율 하락추세는 FTA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수입된 원재료의 관세율, 즉 관세납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관세율에 상관없이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세율 하락이 개별환급에 비해 간이정액환급에서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10〉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날짜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1일
한-EFTA FTA	2006년 9월 1일
한-ASEAN FTA	2007년 6월 1일
한-인도 FTA	2010년 1월 1일
한-EU FTA	2011년 7월 1일
한-페루 FTA	2011년 8월 1일
한-미국 FTA	2012년 3월 15일
한-터키 FTA	2013년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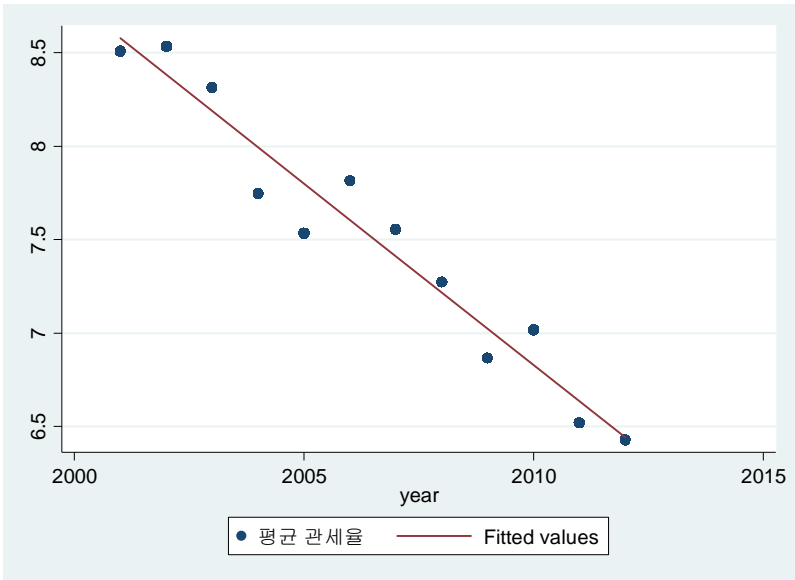
자료: FTA 무역 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ftainfo.do?method=korStatus&mainNum=0402>, 접속일 2014.08.04.

수출용 원재료 수입금액으로 나눈 것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수출업체가 납부한 관세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나눈 것을 ‘관세율’이라고 정의하고 이 관세율 변수를 앞서 언급한 실효세율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대리변수는 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FTA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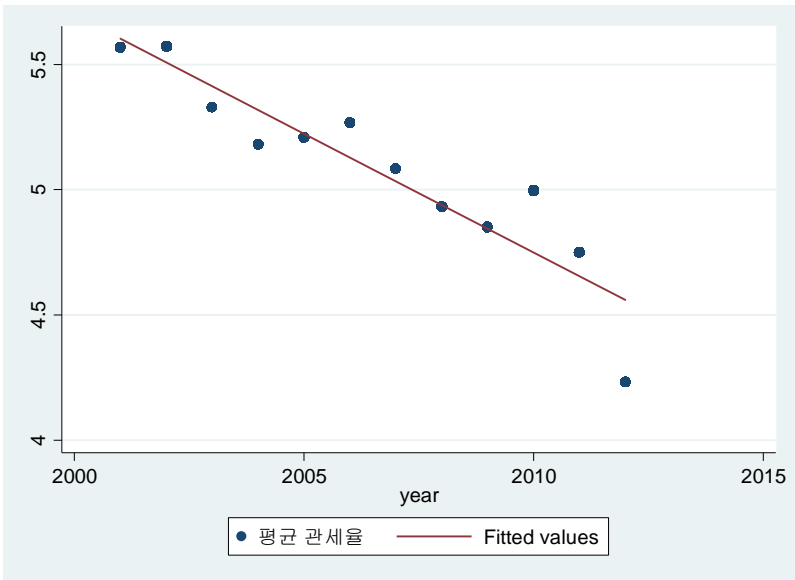
[그림 III-19] 평균 관세율: 개별환급

(단위: %)



[그림 III- 20] 평균 관세율: 간이정액환급

(단위: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출은 주로 관세환급제도와 관세율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규모를 관세환급과 관세율의 함수로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선형회귀방정식 식(1)을 작성하였다.

$$\ln(\exp_{it}) = c + \beta_1 \ln(\text{ref}_{it}) + \beta_2 \ln(\text{tr}_{it}) + m_i + t_t + m_i t + \epsilon_{it} \quad \text{식(1)}$$

여기서 종속변수 및 주요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 $\ln(\exp_{it})$ :  $t$ 년도  $i$ 기업의 수출액(백만원)의 로그 값
- $\ln(\text{ref}_{it})$ :  $t$ 년도  $i$ 기업의 관세환급액(백만원)의 로그 값
- $\ln(\text{tr}_{it})$ :  $t$ 년도  $i$ 기업의 관세율(%)의 로그 값
- $m_i$ : 기업의 고유한 효과(unobservable firm's fixed effect)
- $t_t$ : 시간효과(time effects)
- $m_i t$ : 기업의 고유한 시간추세(firm specific time trends)
- $\epsilon_{it}$ : 오차항 (errors)

일반적으로 수출업체의 수출규모는 관세환급과 관세율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업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수출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생략된 변수에 의한 편의로 인해,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는 과다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세환급 실적자료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용 가능한 패널자료(panel data)로, 회귀분석에 있어서 횡단면 자료와 달리 수출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수출업체의 고유한 특성<sup>8)</sup>을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생략된 변수에 의한 편의를 줄여주고, 회귀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실증분석에서 여전히 생략된 변수에 의한 편의에 문제점을 온전히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연구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각 수출업체가 가지는 고유한 수출 규모의 시간적 추세(firm specific time trends)를 통제하

8) 모형에서는 이를 소위 고정효과(fixed effects)라고 부른다.

였다. 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각 기업의 수출 규모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추정치의 편의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III-1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때, 개별환급을 통한 관세환급액은 연평균 19.36억원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연평균 환급액인 0.43억원에 비해 45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수출액에서도 개별환급을 통한 수출액이 더 컸는데, 수출을 하면서 개별환급을 신청한 수출액은 연평균 1,579억원이었으며, 간이정액환급액의 경우에는 55.9억원이었다. 앞서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에서 보았듯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개별환급을 통한 수출액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입 원재료의 평균 관세율은 개별환급의 경우 7.50%로 간이정액환급의 5.08%보다 높았다.

<표 III-11> 관세환급 종류별 기초통계량

(단위: 개, 억원, %)

관세환급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개별환급	수출액	10,800	1,579.30	1,279.10
	관세환급액	10,800	19.36	147.74
	관세율	10,800	7.50	16.07
간이정액환급	수출액	6,192	55.91	78.17
	관세환급액	6,192	0.43	0.61
	관세율	6,192	5.08	2.97

주: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출액, 관세환급액, 그리고 관세율 정보가 모두 이용 가능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이와 달리 앞서 분석한 관세환급 종류별 분석에서는 모든 환급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두 분석의 분석 대상 업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초통계량도 일치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9)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관세환급액, 수출액, 관세율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표본만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간이정액환급액이 6억원 이상인 표본은 기존 추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outlier)'로 간주하고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Ⅲ-12〉는 관세환급 종류별·산업별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각 관세환급 종류에 따라 산업별로 연평균 수출액, 관세환급액, 그리고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Ⅲ-21]~[그림 Ⅲ-2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살펴본 개별환급 및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통계분석결과와 유사하다.

첫째, 개별환급에서는 수송장비와 석유·석탄제품 산업의 연평균 수출액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연평균 관세환급액 역시 수송장비와 석유·석탄제품 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개별환급에 대한 산업별 관세율의 경우, 음식료품 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송장비와 석유·석탄제품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FTA에 의한 관세율 인하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셋째, 간이정액환급 규모는 개별환급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작은 수준이다.

넷째, 간이정액환급에서는 개별환급과 달리 일반기계 산업에서 연평균 수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수송장비 산업의 연평균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연평균 관세환급액은 일반기계와 화학제품 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산업별 관세율의 경우, 일반기계와 전기·전자기기 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학제품과 수송장비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2〉 관세환급 종류별·산업별 기초통계량

(단위: 개, 억원, %)

관세환급	산업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개별환급	음식료품	수출액	612	221.00	939.44
		관세환급액	612	12.7	58.60
		관세율	612	19.29	35.97
	섬유 및 가죽제품	수출액	2,076	153.96	387.59
		관세환급액	2,076	3.82	7.25
		관세율	2,076	7.99	3.50
	석유 및 석탄제품	수출액	264	10,079.17	33,800.03
		관세환급액	264	208.54	717.72
		관세율	264	4.17	2.49
	화학제품	수출액	2,844	972.32	3,456.80
		관세환급액	2,844	12.91	36.85
		관세율	2,844	5.53	2.03
	제1차 금속제품	수출액	588	2,891.93	13,087.55
		관세환급액	588	13.58	34.39
		관세율	588	3.67	2.81
	일반기계	수출액	1,332	656.06	3,274.82
		관세환급액	1,332	8.29	44.43
		관세율	1,332	6.19	2.28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액	1,668	2,353.601	19,771.69
		관세환급액	1,668	20.46	108.61
		관세율	1,668	5.13	2.27
	정밀기기	수출액	468	242.36	778.32
		관세환급액	468	8.89	41.06
		관세율	468	5.66	1.84
수송장비	수출액	288	12,580.91	38,481.62	
	관세환급액	288	96.67	273.20	
	관세율	288	6.02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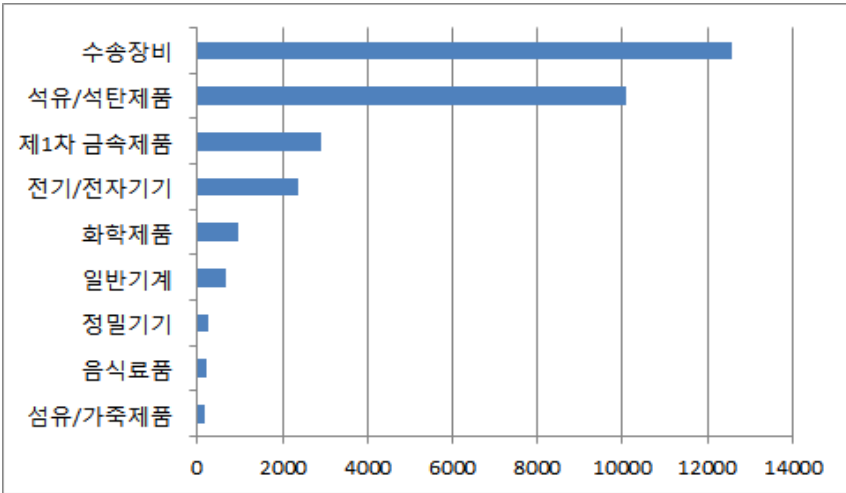
〈표 III-12〉의 계속

(단위: 개, 억원, %)

관세환급	산업	변수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간이징액환급	섬유 및 가죽제품	수출액	1,320	50.52	59.14
		관세환급액	1,320	0.41	0.53
		관세율	1,320	4.81	3.49
	화학제품	수출액	1,092	51.01	71.56
		관세환급액	1,092	0.46	0.60
		관세율	1,092	5.49	2.63
	제1차 금속제품	수출액	396	43.75	58.68
		관세환급액	396	0.37	0.72
		관세율	396	4.19	2.97
	금속제품	수출액	576	47.94	77.84
		관세환급액	576	0.26	0.35
		관세율	576	5.76	2.42
	일반기계	수출액	816	64.81	108.04
		관세환급액	816	0.46	0.83
		관세율	816	5.03	2.71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액	924	51.30	73.28
		관세환급액	924	0.35	0.55
		관세율	924	4.22	2.80
	정밀기기	수출액	444	25.49	27.88
		관세환급액	444	0.26	0.32
		관세율	444	5.30	2.34
수송장비	수출액	132	44.19	54.99	
	관세환급액	132	0.19	0.28	
	관세율	132	5.76	2.51	

[그림 III-21] 개별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수출액 비교(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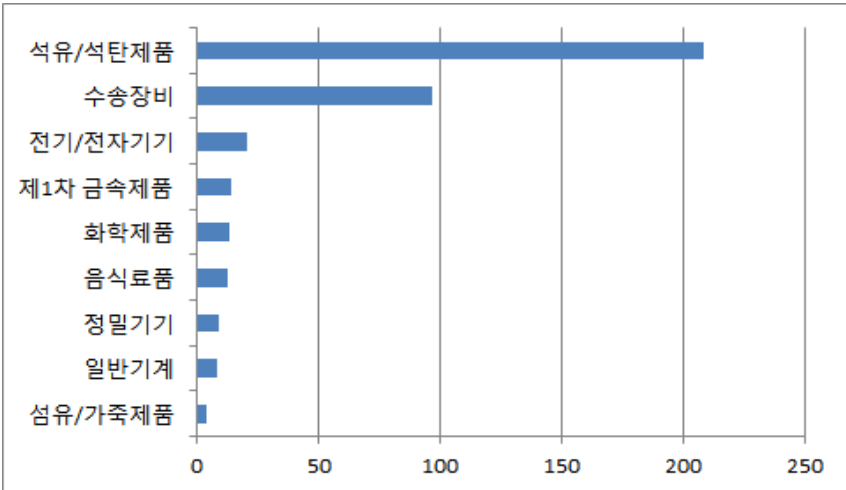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그림 III-22] 개별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관세환급액 비교(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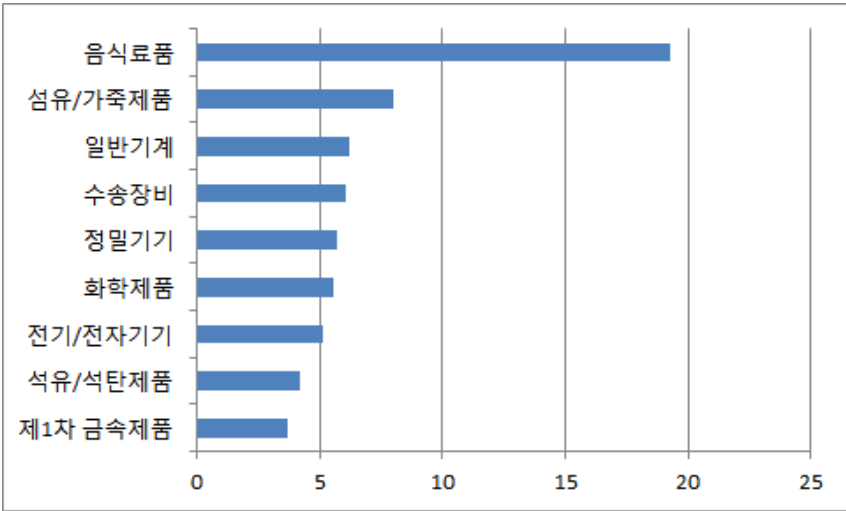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그림 III-23] 개별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평균관세율 비교(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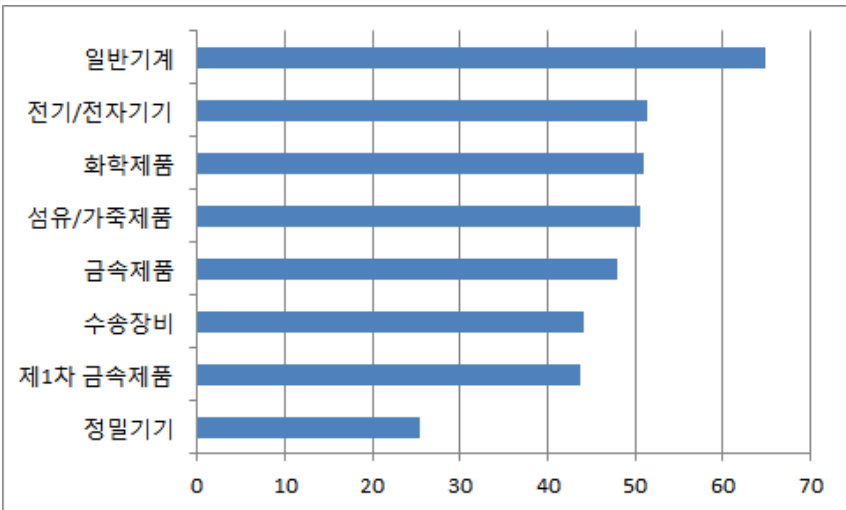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그림 III-24]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수출액 비교(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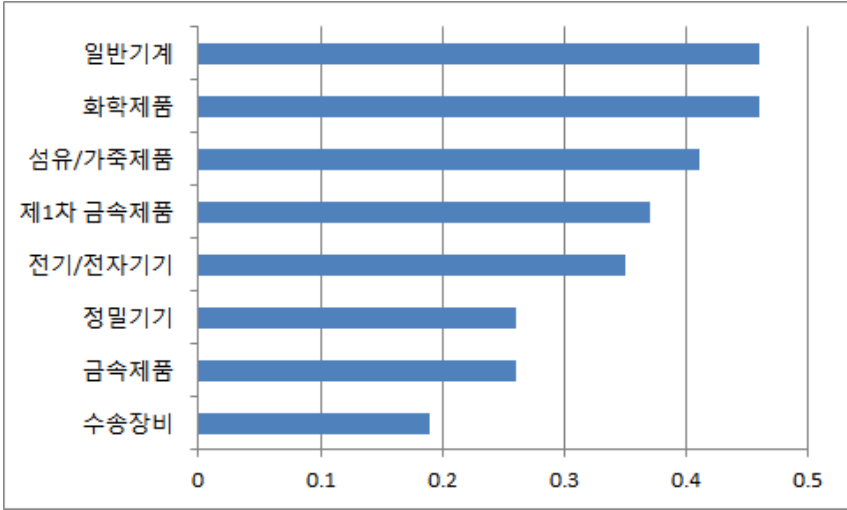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그림 III-25]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관세환급액 비교  
(200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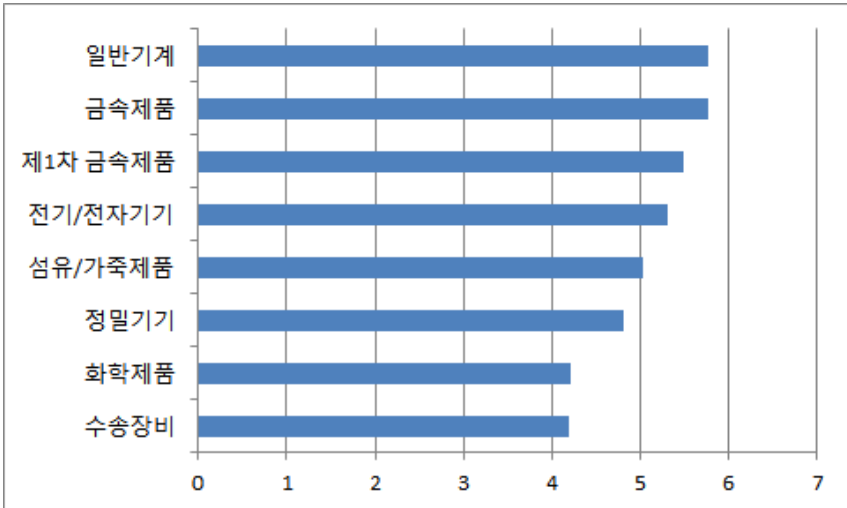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그림 III-26]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산업별 연평균 평균관세율 비교  
(2001~2012년)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형회귀방정식 식(1)을 추정하였다.

- 우선 식(1)을 1차 차분(first-difference)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수출업체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제거한다.
- 1차 차분된 식(1)에 고정효과(Fixed Effect)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각 설명변수들의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이 회귀분석 모델은 흔히 무작위성장모형(Random Growth Model)<sup>10)</sup>이라고 불리며,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업체들의 이분성(heterogeneity)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형회귀방정식은 ‘로그-로그’의 형태로 주요 설명변수인 관세환급액과 관세율의 파라미터는 탄력성을 의미한다.

관세환급 종류별 관세환급의 수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III-13>과 <표 III-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3>과 <표 III-14>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열은 일반적인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두 번째와 네 번째 열은 무작위성장모형으로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11)</sup>

#### 1) 관세환급 종류별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분석

개별환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자. 개별환급의 경우,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은 0.847에서 0.870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수출업체의 고유한 시간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탄력성이 소폭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출업체의 고유한 시간 추

10)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ooldridge(2013), p. 357를 참고하기 바란다.

11) 환급제도별로 고정효과 모형과 무작위성장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두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출업체의 고유한 시간 추세를 고려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업체의 고유한 시간 추세를 고려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탄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더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세를 고려하였을 때 탄력성이 소폭 하락하였다는 의미는 수출업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수출액 성장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모델에서 고려할 때 생략변수 편이가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작위성장모형의 추정치를 중심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열을 살펴보면,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은 0.856으로 이는 환급액의 10% 증가가 수출액의 8.6%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관세율의 탄력성은 -0.06이며, 이는 관세율의 10% 인하가 수출액의 0.6%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열은 환급액의 잔차 효과(residual effects)를 살펴보기 위해 설명변수들의 1년 시차(lag) 변수를 포함시켰다. 개별환급액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만 수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관세율은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 해에도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의 탄력성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관세율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짐을 의미한다. 또한, 2개년 관세율의 탄력성은 -0.147로 이는 10%의 관세율 인하가 2년 동안 1.47%의 수출액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13〉 회귀분석 결과: 개별환급

설명변수	(1) FE Ln(수출액)	(2) RGM Ln수출액	(3) FE Ln(수출액)	(4) RGM Ln(수출액)
Ln(환급액)	0.870*** (0.015)	0.856*** (0.019)	0.864*** (0.015)	0.847*** (0.013)
Ln(환급액) t-1			0.009 (0.007)	-0.008 (0.009)
Ln(관세율)	-0.185*** (0.050)	-0.059*** (0.018)	-0.123*** (0.029)	-0.076*** (0.020)
Ln(관세율) t-1			-0.142*** (0.025)	-0.070*** (0.018)
상수	4.656*** (0.057)	0.019*** (0.002)	0.000 (0.000)	0.020*** (0.001)
표본 수	10,792	9,889	9,889	8,987
수출업체 FE	Yes	Yes	Yes	Yes
연도별 더미	Yes	Yes	Yes	Yes
Residual Effects	No	No	Yes	Yes
Firm-Specific Time Trends	No	Yes	No	Yes

주: 1. 괄호는 Drisc/Kraay 강건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분석해 보면,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은 0.835에서 0.887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세 환급액의 수출 탄력성은 개별환급의 경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개별환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열을 중심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세 환급액의 수출 탄력성은 0.886로 10%의 환급액 증가는 8.9%의 수출액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관세율의 수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환급에서는 관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이정액환급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관세환급제도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 환급에서는 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가 수입 원재료 관세납부 금액에 반영

되어 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역시 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효과가 환급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간이정액환급에서 FTA로 인한 과다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환급액의 잔차 효과를 살펴보면, 당해 연도와 그 다음 해 모두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자의 효과는 양(+)의 부호를 갖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갖는다. 이는 기대하지 않은 부호로 이를 반영한 2개년 개별환급액 탄력성은 0.75로 해당연도의 탄력성보다 낮게 된다. 이 경우에 관세율의 수출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14〉 회귀분석 결과: 간이정액환급

설명변수	(1) FE Ln(수출액)	(2) RGM Ln수출액	(3) FE Ln(수출액)	(4) RGM Ln(수출액)
Ln(환급액)	0.835*** (0.018)	0.886*** (0.016)	0.859*** (0.022)	0.887*** (0.012)
Ln(환급액) t-1			-0.044*** (0.008)	-0.029*** (0.0048)
Ln(관세율)	-0.033*** (0.008)	-0.003 (0.003)	-0.027*** (0.007)	-0.003 (0.003)
Ln(관세율) t-1			-0.019** (0.006)	-0.003 (0.004)
상수	7.496*** (0.293)	0.003*** (0.0004)	0.000 (0.000)	-0.0007 (0.001)
표본 수	6,031	5,440	5,440	4,874
수출업체 FE	515	515	515	515
연도별 더미	Yes	Yes	Yes	Yes
Residual Effects	No	No	Yes	Yes
Firm-Specific Time Trends	No	Yes	No	Yes

주: 1. 괄호는 Drisc/Kraay 강건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 2) 산업별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분석<sup>12)</sup>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환급액 및 업체 수가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형인 무작위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산업별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수출효과를 각각 추정하였다. 본 실증분석은 산업별로 나뉜 부분표본을 사용하여, 산업별 관세환급과 관세율의 수출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때, 회귀분석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부 산업에 대해 표본 수가 작은 문제점이 존재하나,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산업별로 관세환급과 관세율이 수출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관세환급 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업별 개별환급에 대한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를 살펴보면, 산업별 개별환급의 수출 탄력성은 0.578에서 0.963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출 탄력성은 0.963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탄력성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관세환급 10% 증가가, 수출액의 9.6%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 및 관세환급 규모가 가장 큰 석유 및 석탄제품과 수송장비 산업의 개별환급 탄력성은 각각 0.578과 0.807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의 수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앞선 산업별 통계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유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액은 다른 산업에 비해 몇 배 큰 상황이다. 그리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내수용보다는 수출용 석유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에 따른 한계 수출효과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산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석유제품 산업에서 관세 환급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면세제도 도입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석유제품 산업에 대해 사전면세제도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 활용

---

12)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석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유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히 작다. 이로 인해 본 회귀분석에서는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석유·석탄제품 산업의 관세환급 수출효과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방안을 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화학제품과 수송장비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수출에 대한 개별환급의 잔차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화학제품과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개별 환급의 잔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부호는 예상과는 달리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두 산업의 2개년 개별환급 수출 탄력성은 각각 0.809와 0.751로 추정된다.

관세율의 경우에는 섬유 및 가죽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그리고 수송장비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와 수송장비 산업은 관세율이 현재 높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이 두 산업에 대해 FTA의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섬유 및 가죽 제품 산업에서는 관세율의 잔차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2개년 관세율 탄력성은 -0.279로 이는 10%의 세율 인하가 2년 동안 2.8%의 수출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화학제품과 일반기계 산업에서는 관세율의 수출효과가 해당 연도가 아닌 다음 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측되고 있다.

이제,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간이정액환급의 수출효과는 제1차 금속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의 탄력성은 0.875에서 0.925의 범위 안에 있으며, <표 Ⅲ-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기·전자기기와 수송장비 산업을 제외하고 간이정액 환급의 수출 탄력성은 개별환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전자기기와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개별환급의 수출효과가 간이정액환급의 수출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큰 부분을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어 개별환급이 더 효과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표 III-15〉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종류별·산업별 관세환급의 탄력성

산 업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음식료품	0.800	-
섬유 및 가죽제품	0.848	0.925
석유 및 석탄제품	0.578	-
화학제품	0.827	0.910
제1차 금속제품	0.795	0.997
금속제품	0.804	0.925
일반기계	-	0.909
전기 및 전자기기	0.963	0.875
정밀기기	0.881	0.914
수송장비	0.807	0.802

또한, 간이정액환급에서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세율의 수출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앞선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원재료의 관세율과 상관없이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개별 산업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FTA 확산으로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높은 간이정액환급제도 체계에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생각된다.

〈표 III-16〉 산업별 회귀분석 결과: 개별항목

설명변수	(1) RGM Ln(수출액)	(2) RGM Ln(수출액)	(3) RGM Ln(수출액)	(4) RGM Ln(수출액)	(5) RGM Ln(수출액)	(6) RGM Ln(수출액)	(7) RGM Ln(수출액)	(8) RGM Ln(수출액)	(9) RGM Ln(수출액)
	음식료품	섬유· 가죽제품	석유· 석탄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Ln(환급액)	0.800*** (0.031)	0.848*** (0.034)	0.578*** (0.037)	0.827*** (0.009)	0.795*** (0.083)	0.804*** (0.031)	0.963*** (0.033)	0.881*** (0.044)	0.807*** (0.049)
Ln(환급액) t-1	0.024 (0.027)	-0.010 (0.012)	-0.005 (0.045)	-0.018*** (0.004)	0.021 (0.022)	-0.029 (0.016)	0.011 (0.009)	0.023 (0.028)	-0.056** (0.022)
Ln(관세율)	0.026 (0.062)	-0.140*** (0.021)	-0.017* (0.009)	-0.037 (0.025)	-0.065* (0.035)	-0.028 (0.074)	-0.143*** (0.027)	-0.104 (0.110)	-0.392*** (0.118)
Ln(관세율) t-1	-0.067 (0.063)	-0.185** (0.075)	0.011 (0.018)	-0.065** (0.022)	-0.095 (0.087)	-0.099** (0.040)	-0.046 (0.035)	-0.085 (0.119)	-0.104 (0.097)
상수	0.001 (0.003)	-0.029*** (0.004)	0.121*** (0.003)	0.038*** (0.002)	0.071*** (0.012)	0.037*** (0.003)	-0.0002 (0.002)	-0.0003 (0.004)	0.021** (0.008)
표본 수	510	1,727	220	2,370	490	1,110	1,386	390	240

주: 1. 괄호는 Drisc/Kraay 강건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3. 모든 회귀분석에는 수출업체 FE, 연도별 더미, 수출업체 고유의 시간추세변수들이 포함됨

〈표 III-17〉 산업별 회귀분석 결과: 간이정액환급

설명변수	(1) RGM Ln(수출액)	(2) RGM Ln(수출액)	(3) RGM Ln(수출액)	(4) RGM Ln(수출액)	(5) RGM Ln(수출액)	(6) RGM Ln(수출액)	(7) RGM Ln(수출액)	(8) RGM Ln(수출액)
	섬유 및 가죽제품	화학제품	제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Ln(환급액)	0.925*** (0.0146)	0.910*** (0.0111)	0.997*** (0.0109)	0.925*** (0.0173)	0.909*** (0.00846)	0.875*** (0.0218)	0.914*** (0.0126)	0.802*** (0.0408)
Ln(환급액) t-1	-0.0144*** (0.00289)	-0.00402 (0.0126)	-0.00953 (0.0107)	-0.0279** (0.0112)	-0.00334 (0.0122)	-0.0187 (0.0180)	-0.0487** (0.0152)	-0.104*** (0.0246)
Ln(관세율)	0.00279 (0.00337)	-0.0134 (0.0137)	0.0190 (0.0118)	-0.00505 (0.00898)	-0.00604 (0.00593)	-0.0135 (0.0102)	0.00607 (0.0154)	-0.0367 (0.0203)
Ln(관세율) t-1	0.00437 (0.00381)	-0.00890 (0.0110)	0.00563 (0.0160)	-0.00363 (0.00963)	-0.0231 (0.0166)	0.00264 (0.00702)	-0.000973 (0.0129)	0.0463 (0.0309)
상수	-0.0284*** (0.000313)	0.0164*** (0.00127)	-0.00323 (0.00240)	0.00648*** (0.000881)	-0.00554** (0.00194)	-0.00403*** (0.00112)	-0.0163*** (0.000226)	-0.0546*** (0.00576)
표본 수	983	876	309	470	652	733	364	110

주: 1. 괄호는 Drisc/Kraay 강건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3. 모든 회귀분석에는 수출업체 FE, 연도별 더미, 수출업체 고유의 시간추세변수들이 포함됨

## 나. 수출업체 규모별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분석

앞서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는 관세환급의 평균 수출효과를 의미한다. 하지만, 수출규모에 따라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수출규모가 증가할수록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 크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소절에서는 수출규모의 표본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액의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흔히 Quantile 회귀분석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회귀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과 달리 환급액 변화에 따라 수출액의 분포 변화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13)</sup>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Quantile 회귀분석을 위한 선형회귀 방정식은 다음의 식(2)와 같다.

$$\ln(\exp_{it})^p = c^p + \beta_1^p \ln(\text{ref}_{it}) + \beta_2^p \ln(\text{tr}_{it}) + m_i^p + t_t^p + \epsilon_{it}^p \quad \text{식(2)}$$

여기서 종속변수 및 주요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 $\ln(\exp_{it})$ :  $t$ 년도  $i$ 기업의 수출액(백만원)의 로그 값
- $\ln(\text{ref}_{it})$ :  $t$ 년도  $i$ 기업의 관세환급액(백만원)의 로그 값
- $\ln(\text{tr}_{it})$ :  $t$ 년도  $i$ 기업의 관세율(%)의 로그 값
- $m_i$ : 기업의 고유한 효과(unobservable firm's fixed effect)
- $t_t$ : 시간효과(time effects)
- $\epsilon_{it}$ : 오차항

선형회귀방정식 식(2)의  $p$ 는 조건부 분위(conditional quantile)를 나타낸다. Quantile 회귀분석이 일반 선형회귀분석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조건부 분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Quantile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출액의 각 분위

---

13) 본 연구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Quantile 회귀분석 방법과 가장 유사한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Hodge et al.(2013); McMillen(2013a); McMillen(2013b); McMillen(2012); Hao and Naiman(2007).

마다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를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Quantile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선형회귀분석 방법에서는 분석할 수 없었던 관세환급 규모에 따른 수출효과 및 수출액의 분포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sup>14)</sup>

선형회귀방정식 식(2)의 추정 방법은 각 조건부 분위  $p=0.02, 0.03, \dots, 0.98$ 에 대해 Quantile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각 연도 분위별 수출업체의 97개 추정된 수출액을 가지고 Kernel Density를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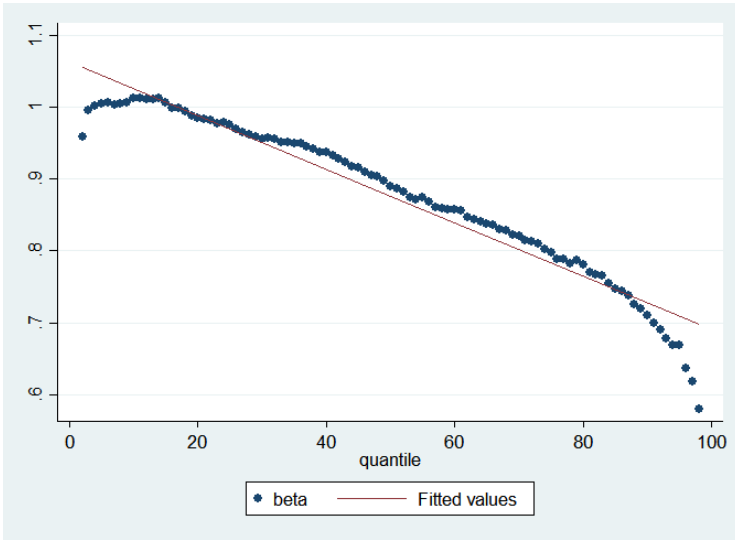
또한, 관세환급액이 변함에 따라 Kernel Density 함수를 각각 추정하여 관세환급 변화에 따른 수출액의 평균값 변화 및 분포변화를 살펴본다. 이때, 수출업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시간 평균(time average)변수를 만들고 선형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표본분위가 변함에 따라 개별 및 간이정액환급액의 탄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III-2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별환급의 경우 표본분위가 증가할수록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액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수출규모가 클수록 더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회귀분석 결과는 환급액이 같은 규모로 증가할 때, 수출규모가 작을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는 [그림 III-28]에서 제시된 것처럼,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간이정액환급액 증가에 따른 한계 수출효과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모두 수출규모가 클수록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작아지고 있지만, 특히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약 70분위 이후에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작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는 제시된 적이 없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고 또한 추후 간이정액환급 대상의 범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활용 가능한 분석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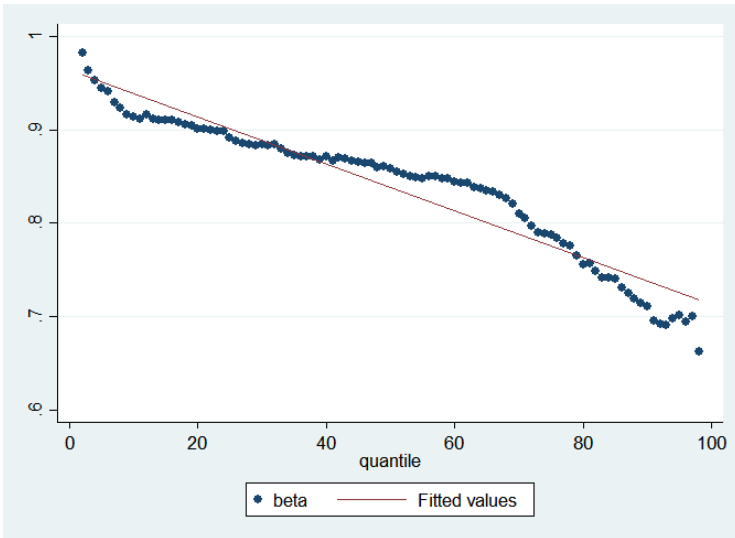
---

14) 위의 식에서는 수출업체의 고유한 시간추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연구에 이를 고려하는 것은 강건성 분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 III-27]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 개별환급



[그림 III-28]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환급액 규모를 사용하여 관세환급의 적용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목적은 환급액이 환급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작아 관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환급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소규모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 기준이 '6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적용 기준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급액 규모에 따라 수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수출액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다음의 두 식을 살펴보자.

$$E(\ln(\exp)|X, \ln x = \gamma_0) = \hat{c} + \hat{\beta}_1 \gamma_0 + \hat{\beta}_2 \ln(tr) \quad \text{식(3)}$$

$$E(\ln(\exp)|X, \ln x = \gamma_1) = \hat{c} + \hat{\beta}_1 \gamma_1 + \hat{\beta}_2 \ln(tr) \quad \text{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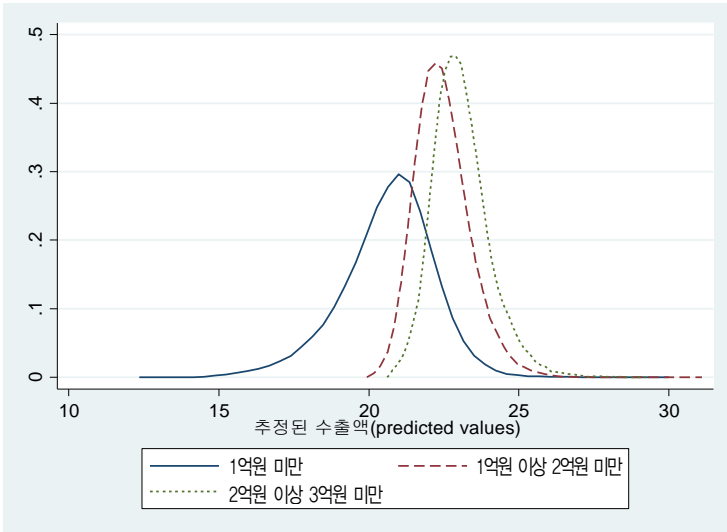
만약 탄력성( $\hat{\beta}_1$ )이 0보다 크면 추정된 수출액은  $\hat{\beta}_1(\gamma_1 - \gamma_0)$  크기만큼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만약 탄력성( $\hat{\beta}_1$ )이 0보다 작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환급액 규모에 따라 수출액 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Ⅲ-29]~[그림 Ⅲ-32]에서 환급 종류 및 환급액 규모에 따라 수출효과와 수출액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개별환급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환급액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수출업체의 수출액 분포는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환급액 규모가 1억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그룹으로 이동할 경우, 수출액 규모는 우측으로 이동하되, 그 분포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출액 규모의 변동 정도가 작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림 Ⅲ-30]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급액 규모가 6억원 이상인 수출업체들은 주로 석유·석탄제품 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 수출액 분포는 환급액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수출업체의 수출액 분포와 유사하게 상대적

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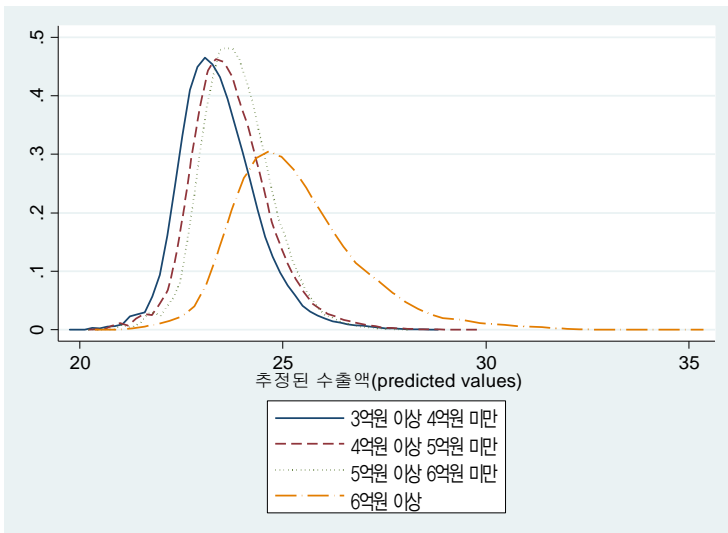
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정된 평균 수출액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1) 환급액 규모가 1억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그룹으로 이동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 환급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때 추정된 평균 수출액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수출 탄력성이 환급액 규모가 큰 수출업체일수록 더 낮음을 의미한다.

이제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간이정액환급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측되고 있으나, 개별환급과 달리, 관세환급이 3억원 이상인 그룹들에서는 수출액의 분포가 다른 그룹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환급액 규모가 커질수록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때 추정된 평균 수출액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작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그룹들보다 1억원 이상인 그룹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증분석 결과가 정책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세 환급액 규모가 큰 수출업체일수록 간이정액환급의 수출효과는 작은 반면, 간이정액환급제도의 특성상 환급액 규모가 커질수록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쉽게 정당화되기 힘들다. 다시 말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기준을 확대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관세환급 지원액 등과 같은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이는 관세환급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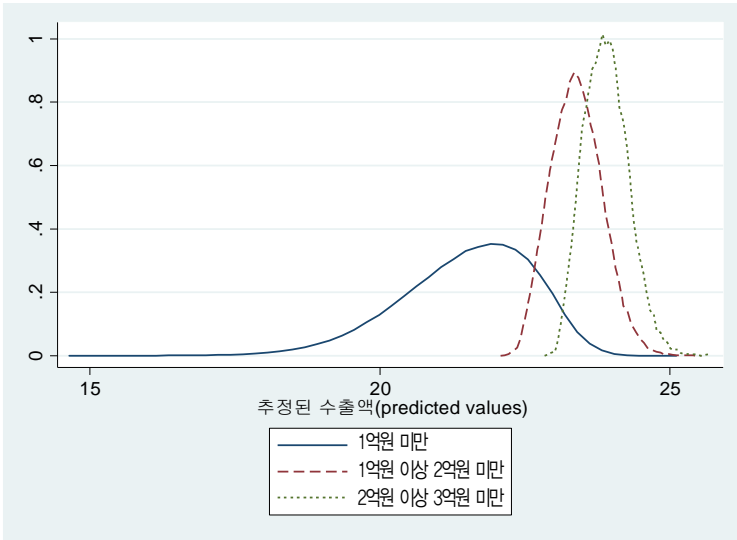
[그림 III-29] 수출액에 대한 환금액의 효과: 개별환급(3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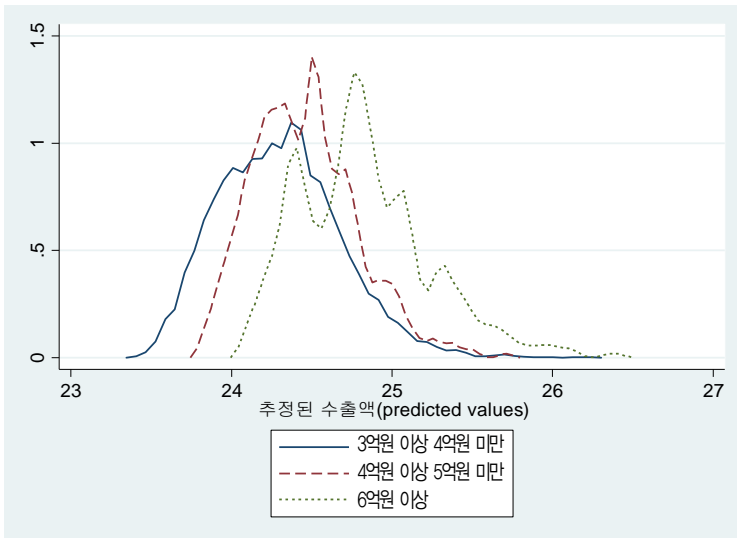
[그림 III-30] 수출액에 대한 환금액의 효과: 개별환급(3억원 이상)



[그림 III-31]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효과: 간이정액환급(3억원 미만)



[그림 III-32]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효과: 간이정액환급(3~6억원)



#### 다. 실증분석의 한계

본 회귀분석에 있어서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과 관세환급 사이에 동시성 문제(simultaneous problem)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세환급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수출이 증가할수록 관세환급액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도구변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변수를 찾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도구변수를 찾아내고 이것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세환급에 대한 고유한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를 평균적으로 살펴본 것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과 달리 수출 및 관세환급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의 수출효과 및 수출액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재 관세환급제도의 쟁점사항인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정책대상 기준에 대한 논의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별로 관세환급의 수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석유·석탄제품 산업에 대해 보세구역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 라.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관세환급이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환급액 규모에 따라 수출효과와 수출액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발견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별환급의 수출 탄력성은 0.847에서 0.870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간이정액환급의 수출 탄력성은 0.835에서 0.887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호하는 회귀분석모형의 결과(〈표 Ⅲ-13〉과 〈표 Ⅲ-14〉의 마지막 열)를 토대로 살펴보면, 간이정액환급의 수출 탄력성은 0.887로 개별환급의 수출 탄력성보다 조금 더 크게 관측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액의 한계 수출효과가 개별환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표본분위가 증가할수록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수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작아짐을 의미한다.

산업별 관세환급의 수출 탄력성을 보면,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산업별 수출 탄력성이 0.578에서 0.963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 및 전자산업에서 수출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산업별 관세환급의 수출탄력성은 0.802에서 0.997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제1차 금속제품 산업에서 관세환급의 수출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송장비 산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산업과 수송장비 산업을 제외하고 간이정액환급의 수출 탄력성은 개별환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며, 이는 관세환급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전기 및 전자기기 및 수송장비 산업에서 관세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산업의 수출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FTA 활용을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정액환급액이 관세율과 상관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에 대한 분석에서는 관세환급 종류에 상관없이 환급액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그룹에서 수출액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출액 증가 속도가 느림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평균적으로 환급액이 클수록 수출액도 큰 경향이 있지

만, 환급액이 증가할수록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짐을 의미한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도 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향후 간이정액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바탕이 된다. 우선 크게 두 가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실증분석결과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용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환급액이 커질수록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또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관세율과 무관하여 환급액이 클수록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에 대해서 사전면세제도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관세환급 규모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몇 배 더 크지만, 반면 환급의 한계 수출효과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환급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면세제도를 통해 교정하고자 한다면, 석유 및 석탄제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관세환급과 관련된 비효율성의 개선은 결국 석유제품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IV.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

본 절에서는 FTA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관세환급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앞선 실증분석에서 보았듯이, 관세환급제도는 분명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관세환급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FTA가 확산되는 현재의 경제 환경을 감안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본 절에서는 개별환급과 관련해서는 FTA로 인해 동일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문제와 이에 따른 과다 환급에 대해 논의한다.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아닌 관세율이 상이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은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없는 상황이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어렵지만,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FTA로 인해 간이정액환급에서도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고 원재료의 국산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이정액환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FTA 확대로 과다 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FTA로 인해 무세화되면서 관세환급 관련 문제도 축소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는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런 품목들에 대한 과다 환급과 이에 따른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환급이 아닌 사전면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에 대한 관세환급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FTA로 인한 대체환급 문제

### 가. FTA로 인한 개별환급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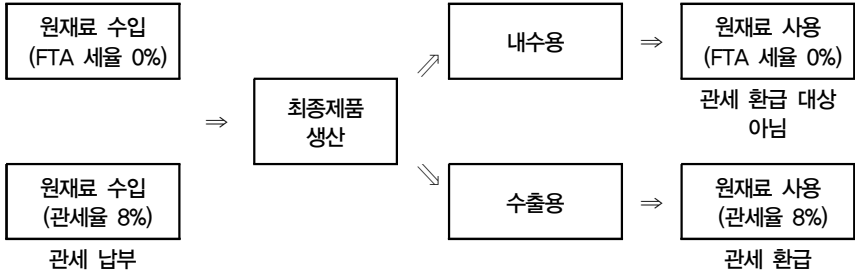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FTA가 확대되면 원재료의 관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이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FTA로 인해 해당 원재료가 무세로 수입된다면 수출업체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세 환급액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FTA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관세환급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다. 한 예로, 한 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해서 최종재를 생산하는데, 최종재의 일부는 국내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국외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하자. 단순하게 이 업체에서는 해당 원재료를 일부는 FTA 세율을 적용 받아 무세로 수입을 하고 있고, 일부는 관세를 납부하며 수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이지만 동종 동질의 원재료라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이 업체는 최종재를 수출하면서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수출재에 사용된 원재료는 되도록 관세를 부담한 원재료를 사용하려는 유인이 있고, 내수용에 사용된 원재료는 되도록 FTA 무세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려는 유인이 있다. 즉, 관세를 부담한 원재료를 수출용에 사용함으로써 관세 환급을 통해 관세부담을 줄이고, 내수용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낮은 세율의 원재료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동종 동질의 원재료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에서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반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수출용과 내수용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납부한 관세부담을 정확히 구분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업체처럼 높은 관세를 부담한 원재료를 수출용에 사용함으로써 관세환급을 통해 관세부담을 줄이고, 내수용에는 낮은 세율의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과다 환급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IV-1] 일반세율과 FTA 세율 적용에 따른 과다 환급 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현상은 특정 업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업체들이 이처럼 내수용과 수출용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양한 원재료가 내수용과 수입용에 섞여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나. 국산 원재료의 대체환급

앞선 현상은 FTA 이전에는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의 혼합으로 인한 관세환급이 문제되었었다. 이를 대체환급이라고 한다.

현재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최종재 생산에 사용된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이 있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된 원재료가 수출재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종재에 사용된 일부 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도 환급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표 IV-1〉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관세환급특례법」에서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에 대체환급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동질적인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간의 대체성을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우선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부담한 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하면 수출보조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로 동종 동질의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구분할 수 없이 사용될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대체환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국내법에 명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세환급특례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IV-2〉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i)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 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 단, 그러나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755&seqno=294190&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755&seqno=294190&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검색날짜: 2014. 07. 10)

〈표 IV-3〉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3: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 판정지침

-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수 있다.
- 환급이 청구되는 특정 수입선적분을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환급 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755&seqno=294190&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755&seqno=294190&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검색날짜: 2014. 07. 10)

국제적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규정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동종 동질인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국산 원재료가 있는 경우는 국산 원재료를, 국산 원재료가 없다면 수입 원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만약 이런 원재료가 있다면 어느 국가나 국산 원재료를 더 사용할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원재료 국산화에 도움이 되

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FTA가 확대되면서 이런 대체환급이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간에 아닌 관세부담이 다른 수입 원재료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체 환급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에서는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관세율이 다른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은 이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과다 환급이라는 부작용과 함께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특별법」에서는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간의 대체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 간의 대체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 교역의 절반 이상을 FTA 체결국들과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 간의 대체환급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에 대체환급을 언급한 것이지 관세율이 다른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는 과다 환급이 될 수 있고 과다 환급이 될 경우 수출보조금으로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 되어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EU FTA 협상에서 EU는 우리나라 관세환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처럼 과다 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EU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간의 대체 환급을 인정하는 규정을 「관세환급특별법」에 명시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또한 FTA가 계속 진행되면서 점차 관세율이 무세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업체들의 FTA 활용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필요

가 있다. FTA를 통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이 낮아지고 없어진다면, 결국은 수출업체와 세관 당국 모두에게 관세환급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도 환급에 따른 금융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위험비용도 줄일 수 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FTA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관당국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세환급 규정 및 절차, 원재료 관리 등을 시행하여 FTA 활용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FTA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입 원재료 사이의 관세율 차이가 클 때에는 과다 환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체환급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개선

간이정액환급제도도 FTA 확산에 따라 점차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FTA가 점점 확대될수록 간이정액환급을 통한 과다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부수적으로 발생하던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제도 자체를 제도 취지에 맞게 한정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 적용 중소기업 규모

#### 1) 중소기업 기준

간이정액환급제도도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환급 관련 비용에 비해 환급액이 작아서 환급을 신청할 유인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취지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중소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sup>15)</sup>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에는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한도액이 2천만원 이하에서 시작하였지만, 1994년에는 1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2001년에는 3억원 이하, 2010년에는 6억원 이하로 적용 대상이 빠르게 확대되었다.<sup>16)</sup>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 기준이 확대되어 왔지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숫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에는 간이정액환급 이외에 다른 제도들과 함께 운용되었다가, 1998년부터 정액환급과 관련해서는 간이정액환급제도만이 운용되었다. 그래서 1998년 이후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면, 전체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중에서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적용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변경한 2001년, 2003년, 그리고 2010년을 전후해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수를 보면 큰 변화가 없다. 특히, 2001년에는 환급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 증가시켰고, 2010년에는 2001년의 2배인 6억원으로 증가시켰지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

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직전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16) 정재완(2011a), <표 II-1>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환급액 기준, p. 30.

〈표 IV-4〉 간이정액환급 이용 중소기업 수

(단위: 개, %)

	전체 환급 이용 업체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비중	평 균		
				전체 환급 이용 업체	간이정액환급 이용 업체	비중
1994	9,979	4,788	48.0	-	-	-
1995	12,187	5,740	47.1	-	-	-
1996	10,921	6,039	55.3	-	-	-
1997	-	-	-	-	-	-
1998	-	8,661	-	-	-	-
1999	-	10,120	-	-	-	-
2000	15,802	10,054	63.6	-	-	-
2001	16,188	10,120	62.5	16,290	10,147	62.3
2002	16,392	10,174	62.1			
2003	17,389	10,690	61.5	17,237	10,239	59.4
2004	17,098	9,990	58.4			
2005	18,170	11,126	61.2			
2006	16,736	9,665	57.7			
2007	16,438	9,513	57.9			
2008	17,644	10,466	59.3			
2009	17,186	10,222	59.5	17,225	10,442	60.6
2010	17,049	10,160	59.6			
2011	17,361	10,395	59.9			
2012	17,391	10,594	60.9			
2013	17,097	10,620	62.1			

자료: 관세연감(1995), p. 55, 관세연감(1996), p. 60, 관세연감(1997), p. 72, 관세청 보도자료(2000.12.28)를 이용하였으며, 1997년~1999년 사이의 일부 자료는 찾을 수 없었음

관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 통관지원국 > 관세환급통계(2013년 12월 기준)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

=172&bbsid=BBSMSTR\_1032&bcode=003&nltid=943(검색날짜: 2014.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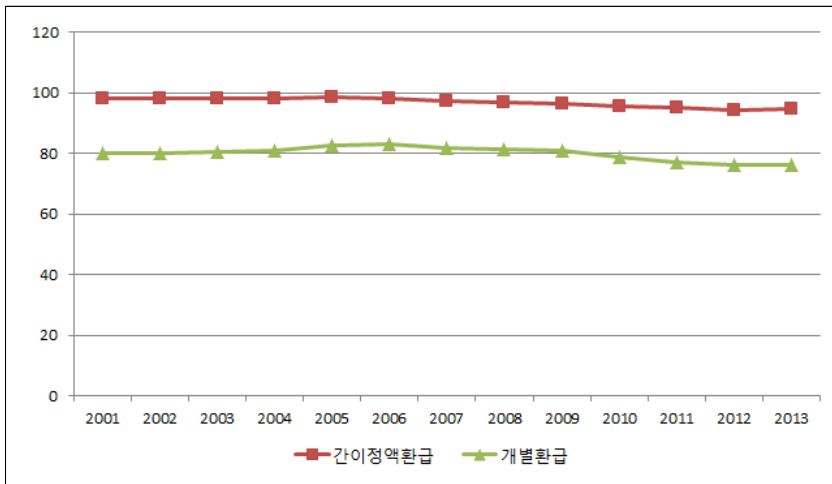
앞서 제Ⅲ장에서 분석하였듯이,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모두에서 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의 평균 환급액은 1억원 미만이다. [그림 Ⅲ-3]에서 보았듯이 2013년 기준으로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 중 약 76% 업체의 환급액은 1억원 미만이고,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 중 약 95%

업체가 환급액 1억원 미만이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1년 이후 13여 년 동안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1년 이후 13여 년 동안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환급액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구간별 업체 수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 업체의 환급액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다수의 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IV-2]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1억원 미만 업체 수 비중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 정재호(2013), pp. 44~45; 119~122를 참고해 업데이트하여 저자가 그래프로 제작함

## 2) 향후 정책방향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의 76% 정도가 1억원 미만의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취지는 환급 관련 비용에 비해 환급액이 작아서 환급을 신청할 유인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소규모 환급액을 받게 하

려는 제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또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세 환급액이 커질수록 간이정액환급으로 인한 과다 환급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개별환급을 받는 76%가 1억원 미만의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여 그 이상의 관세 환급액을 신청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것이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것보다 환급액이 많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환급에 비해 간이정액 환급액이 훨씬 적다면 개별환급을 이용할 것이다. 현재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환급보다 간이정액환급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선 회귀분석에서도 보았듯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관세율의 수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환급에서는 관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환급에서는 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가 수입 원재료 관세납부금액에 반영되어 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역시 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효과가 환급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곧 간이정액환급에서는 FTA로 인한 과다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억원 미만의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많은 업체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환급비용을 감수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몇 배의 환급액을 받는 업체가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확산 이전인 기존의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추가적인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FTA 확대에 이런 장점이 사라졌다. FTA로 인해 국산 원재료가 아닌 FTA 특혜세

을 받은 원재료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 원재료 사용이 위축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이 정액환급 이용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느 국가이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대해 보조금 위반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리고 정액환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제적 규범인 WTO 보조금협정과 FTA 등을 고려해서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다 환급은 수출보조금으로 WTO 보조금협정 위반 사항이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보조금 위반으로 제소하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개별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76%인 상황에서 그 몇 배의 환급액을 간이정액환급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체 간이정액환급제도 자체를 극도로 최소화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여지도 감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회귀분석에서도 표본분위(quantile)가 증가할수록 수출액에 대한 환급액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어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수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작아지고 있었다. 즉, 환급액이 증가할수록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는 현상은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제도 자체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작용을 감안할 때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나. 적용 품목

### 1) 적용 품목 조정

앞선 <표 II-1>에서 보았듯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고시되는 품목 수가 2012년부터 4,000개를 넘어 2014년 현재 4,260개이다. 지난 2004년에 간

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정비하여 약 2,900여 개로 대상 품목 수를 줄였지만, 그 이후 1,000여 개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품목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수출품목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출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 매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이와 더불어 실제 환급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품목들이 대상 품목에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품목들을 제외하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향후 이 품목을 다시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이 없어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이 적용 대상에 그대로 있어도 경제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향후 정책방향

대상 품목을 자주 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지만, 대상 품목을 그대로 남겨둠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대상 품목이 많아질수록 관리하는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품목이 증가할수록 어느 품목에서 과다 환급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곧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FTA로 인해 실행세율이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과다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FTA 실행세율이 무세(0%)인 수입 원재료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로 인해 무세 수입되는 품목들로 인해 간이정액환급의 단점인 과다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으로 인한 과다 환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런 품목들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FTA가 확대되는 추세에서는 이런 품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여겨진다.

수출품목의 다양화로 인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도 우선 순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이 많이 신청하는 개별환급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중소기업 우대 정책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개별환급을 통해 발생하는 환급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선 제Ⅲ장 분석에서 보았듯이, 수출 증가로 인해 간이정액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으로는 일반기계 산업이 두드러졌다. 또한 금속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에서도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급액 1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들이 건의하는 품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급액 1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들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며,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증분석에서 보았듯이, 간이정액환급의 한계 수출 효과가 개별환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환급액 규모가 작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급액이 소규모인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환급액이 소규모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환급은 대외적으로도 WTO 보조금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간이정액환급 대상이지만 개별환급 실적이 없는 품목들은 간이정액 환급액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오래전의 개별환급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FTA가 확산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있고, 이런 품목들 중에서 간이정액환급 규모가 크다면 우선 개별환급신고를 통해 소요량 등의 환급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선 제Ⅲ장의 산업별 분석에서 보았듯이,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의 경우에

는 수출액 대비 환급액이 개별환급보다 높아 품목별로는 과다 환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반면 농림수산물 산업에서는 개별환급에 비해 수출액 대비 환급액이 지나치게 낮아 과소환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석유제품 관련 관세환급제도 개선<sup>17)</sup>

#### 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원유를 전량 수입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석탄 및 석유제품 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석탄 및 석유제품의 환급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석탄제품의 수출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석탄 및 석유제품 산업의 수출은 모두 석유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유제품의 관세환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관세환급의 급격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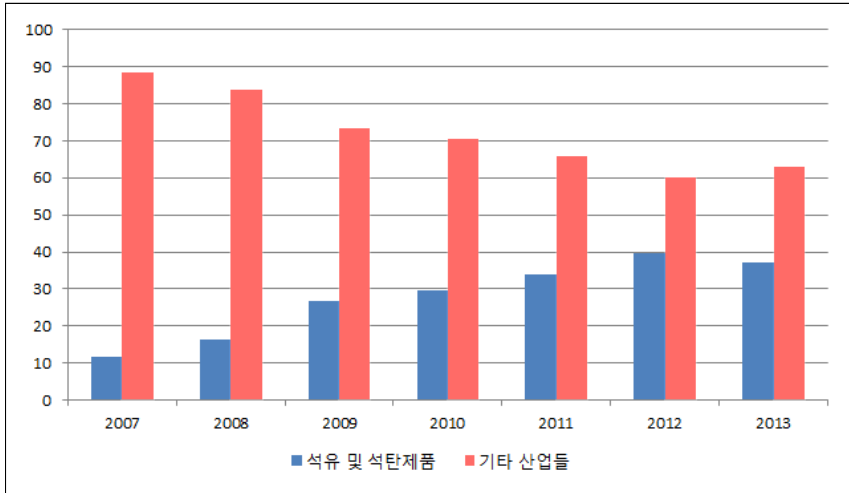
석유제품의 관세환급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7년에는 약 10% 수준에서 2012년에는 40%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관세환급 비중이 높은 것은 우선은 직접적으로 석유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의 유일한 원자재인 원유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부품과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여타 산업들과 달리 석유제품 산업은 특이한 산업이다.

---

17) 이하의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본원의 『재정포럼』에 발표한 원고의 일부(정재호(2014), pp. 31~38)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그림 IV-3] 석유 및 석탄제품이 전체 관세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실적(2001~2013) 내부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가공 및 작성

수출액(HS 4단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수출제품 중에서 석유제품이 최근 들어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자동차, 전자집적회로, 휴대폰, 선박 등과 비교해 볼 때 2011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5〉 수출품목별 수출액 기준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석유제품	5	1	6	4	1	1	1
승용자동차	1	4	5	3	2	2	3
전자집적회로	2	5	3	1	3	3	2
휴대폰	3	3	2	6	6	7	4
선박	4	2	1	2	4	4	6

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서 HS 4단위 기준으로 수출액을 축출하여 이 수치를 바탕으로 저자가 순위를 표로 작성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2014.09.02.

## 나. 사전면세제도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1975년부터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사전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사전면세제도는 일정 기간 내에 수출물품에 사용될 원재료, 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사전에 면세하는 제도로 수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소요량, 납부한 세액 등을 파악해서 환급받는 관세환급제도에 비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환급은 납부한 관세를 다시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전면세제도를 이용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975년에 사전면세제도를 포기한 것처럼 사전면세제도에도 단점이 있다. 수입된 원재료가 국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칠 경우 사후에 이를 파악해서 수출재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사전면세를 받고 수입된 원재료가 내수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1975년에도 산업이 발전하고 교역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전면세제도를 포기하고 사전면세제도보다 행정비용이 더 발생하는 관세환급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도 일반 수입재에 대해 사전면세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앞선 문제점들이 여전히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특정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면세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FTA가 확산되고 있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다 환급과 이로 인한 WTO 보조금협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면세제도의 장점을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면세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바로 단일 원재료인 원유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이라고 생각된다.

다양한 부품과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산업들과 달리 석유제품 산업은 원유라는 하나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매우 드문 산업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석유산업의 원유에 대한

환급이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앞선 실증분석에서도 개별환급의 경우, 산업별 환급액의 수출 탄력성은 0.578에서 0.963로, 그리고 간이징액환급의 산업별 환급액의 수출 탄력성은 0.802에서 0.997로 나타났다. 이 중 석유 및 석탄제품의 수출 탄력성은 0.578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다. 그리고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수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각각 0.5%와 0.6%이었지만,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은 1.3%로 이들 산업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원유 관련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보다는 관세환급제도의 비효율을 없애는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사전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대안으로 보세구역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보세구역제도를 통해 관세를 유예함으로써 사전면세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다. 사전면세제도 효과 활용

현재 원유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석유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 당시에 납부한 원유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의 유류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정유사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면, 현재와 달리 원유를 수입할 때 원유가 보세구역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 해당 원유를 이용해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소비지 과세주의에 따라 과세되는 것 없이 그대로 수출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인 경우에는 원유에 대한 관세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의 유류세를 납부해야 된다.<sup>18)</sup> 다시 말해, 내수용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유에 대한 관세와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 등을 납부하지만, 수출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세,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만큼 수출재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표 IV-6〉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 변화

	원유 수입	내수용 제조	수출용 제조
현행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내국세 납부	관세, 부가가치세 환급
보세구역	-	관세, 부가가치세, 내국세 납부	-

자료: 자저 작성

정유사를 보세구역으로 전환하면 납세자인 정유사는 원료(원유)과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수용에 사용된 원유 소요량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현재의 관세환급과 유사하여 별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현재는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환급행위였지만, 보세구역에서는 납세를 위한 납세행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의 비중이 더 증가한 상황에서는 수출용에 대한 환급제도보다는 사전면세제도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정할 수 있다.

〈표 IV-7〉 석유제품의 수출과 내수 비중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용	7.8	17.2	37.1	40.0	39.9	46.3	45.4	45.6	51.9	53.8	52.6
내수용	92.2	82.8	62.9	60.0	60.1	53.7	54.6	54.4	48.1	46.2	47.4

주: 휘발유, 등유, 경유, 벵커A, 벵커B, 벵커C, 항공유의 생산량을 토대로 저자가 계산

자료: 대한석유협회, 국내통계

[http://www.petroleum.or.kr/201007/statistics/month/month\\_list.jsp?pageNum=3](http://www.petroleum.or.kr/201007/statistics/month/month_list.jsp?pageNum=3), 2014.11.05

18)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체가 원료 과세와 제품 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원유 관세가 3%인 반면 석유제품의 관세가 5%이기 때문에, 정유사에서는 원료(원유) 과세가 제품(석유제품) 과세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유 관세 3%를 납부하고 석유제품에 대해 관련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 4. 일부 사전면세제도의 확대

FTA 확산으로 단일 품목에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여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내수용과 수출용에 혼합해서 사용되는 문제점들로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출용 원재료가 모두 0% 관세율로 수입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내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다 환급은 WTO 보조금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서 과도한 환급은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달리 소규모 경제로 모든 원재료를 국내에서 충족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거나 또는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FTA 체제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관세환급보다는 사전면세제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향후 보조금 등의 통상마찰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원재료의 수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 제도를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일 품목에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고 그 세율 차이가 크면서 관세환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장근호·허용석(2012)에서도 개별환급에서의 원자재 부정사용에 따른 과다 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과다 환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면세제도인 관세유예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제Ⅲ장의 산업별 분석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석유제품 산업으로 관세환급액이 약 2조원 정도로 전체 관세환급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수송장비 산업, 일반기계 산업 등의 순서로 환급액이 많았고, 이들 5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석유 및 석탄제품,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그리고 화학제품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관세환급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경우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석유제품 산업의 관세환급 규모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몇 배 더 크지만, 환급의 한계 수출효과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으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를 사용하여 내수용보다 수출용 생산이 더 많은 석유제품 산업의 상황에서, 관세환급에 따른 비효율성을 사전면세제도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관세환급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석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유에 대해 사전면세제도 활용을 제안하였다. 현재 일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도 보세구역제도를 활용하여 사전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환급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세를 부담하고 수입하는 원재료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유제품 산업을 비롯해서 기타제조업제품 산업, 정밀기기 산업, 비금속광물제품,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등이 이에 속했다. 이들 산업들의 환급률이 추후에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FTA를 통한 원재료 수입을 더 권장하면서 사전면세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전면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면세제도를 관세환급제도로 전환한 이유는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사전면세를 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막기가 어렵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면세제도의 단점을 감안하여 FTA로 인해 관세율 차이가 커서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높고 관세환급액이 많으며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높은 품목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관세환급제도나 사전면세제도 등은 제도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FTA 활용률을 높여 FTA를 통해 수출용 원재료를 무세로 수입하는 것이 수출기업이나 세관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다.

---

## V.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에서는 FTA 확산이라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세환급제도의 활용 현황을 업체규모별, 산업별, 환급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액 변화 추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이 2008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은 2조원 정도였지만,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에 3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관세환급액의 빠른 증가는 개별환급액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지만 간이정액환급도 역시 전체적인 관세환급 변화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액 증가는 석유제품 산업의 개별환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석유제품 산업의 2007년도 개별환급액은 약 2,800억원인데 2012년에는 약 2조원을 넘어 5년 사이에 개별환급액이 약 1.7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화학제품 산업에서 약 2천억원 이상, 그리고 일반기계,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약 1천억원 정도의 개별환급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수출업체당 개별환급액도 2000년 약 2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6억원까지 증가하였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도 수출업체당 환급액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0.15억원 정도였지만, 2012년에는 0.26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업체당 간이정액환급액이 1~2억원인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로 수출에 참여하여 환급을 받고 있었다.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액이 6억원 이상인 업체들의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관세환급을 받고 수출한 금액이 2001년에는 약 100조원이었는데 2004년에 200조원을 넘긴 이후 2011년 300조원, 그리고 2013년에는 약 400조원에 육박하였다. 이처럼 관세환급액 규모가 큰 업체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세환급액도 동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석유제품 산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개별환급액이 약 94%를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이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과거 1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수는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가 약 60%,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는 40%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 수는 많지만 환급액 규모는 작다.

환급액 규모별로 보면, 환급받는 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이다. 2013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약 95%이고, 개별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약 76%이다. 수출액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에서도 환급규모가 커질수록 수출에 기여하는 한계 효과가 작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환급 대상 수출액에서 환급액 비율을 보면, 개별환급이 간이정액환급보다 약 2배 정도 높아 간이정액환급보다 개별환급이 수출에 대한 비용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관세환급액을 비교해보면,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많다. 2012년에는 석유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액이 2조원을 넘어 전체 관세환급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수송장비 산업, 일반기계 산업 등의 순서로 환급액

이 많았다. 이들 5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약 80%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석유 및 석탄제품,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그리고 화학제품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관세환급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일반기계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으로 이들 4개 산업이 전체 간이정액환급액의 약 72.8%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관세환급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의 경우,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은 0.578에서 0.963의 범위에 있으며 전기 및 전자산업의 관세환급액의 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이 0.802에서 0.997의 범위였다.

특히,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 분석결과에서 석유 및 석탄제품의 탄력성이 0.578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으며,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수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각각 0.5%와 0.6%이었지만,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은 1.3%로 이들 산업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전량을 수입하는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다른 산업들에 앞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보다는 관세환급제도의 비효율을 없애는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면세제도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석유제품 산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비지 과세주의에 의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수입 원재료의 관세액을 환급해주는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의 관세납부 사실과 그 해당 원재료가 수출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면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의 원재료 배분 등의 문제로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원재료의 납세 여부를 불문하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나마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FTA를 통해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원재료의 국산화를 저해하면서 과다 환급의 문제만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제도 취지에 맞게 환급액이 소액인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과다 환급이 보조금 문제로 연계되어 통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간이정액환급제도 자체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간이정액환급은 관세율과 거의 상관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FTA가 확대되어 수입 원재료의 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급액의 수출 효과를 보면, 개별환급에 비해 간이정액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간이정액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들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액이 작을수록 환급에 따른 한계 수출효과가 개별환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급액 1억원 이하인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이들 업체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FTA가 확대되면서 FTA 특혜세율이 0%인 품목은 우선적으로 간이정액대상에서 제외해서 과다 환급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선 분석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의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간이정액환급보다 높은 것이 타당하지만,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인 것으로 분석되어 제1차 금속제품 산업과 관련된 간이정액환급 품목의 환급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농림수산물 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에 비해 수출액 대비 환급액이 지나치게 낮아 과소 환급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과 관련해서는 FTA로 인해 동일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이 인정되고 있지만, 관세율이 상이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체환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교역의 절반 이상을 FTA 체결국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의 원재료 배분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체환급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관세환급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세율 차이가 큰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을 제한함으로써 FTA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별환급에서 평균 수출액 대비 환급률이 높은 산업으로는 기타제조업제품, 정밀기기,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관세가 부과된 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이들 산업들의 환급률이 추후에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이들 산업에서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관세환급 품목에 주목하면서 FTA를 통한 원재료 수입을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사전 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용 원재료 사이

의 관세율 차이를 사전면세제도를 통해 없앴으로써 과다 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곧 과다 환급에 따른 보조금 문제와 통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향후에도 관세환급에 따른 비용과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세제도 등의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추이 및 특징과 함께 환급종류별, 산업별, 환급규모별로 분류하여 통계적 분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한된 자료로 인해 회귀분석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과 달리 관세환급의 평균적인 수출효과뿐만 아니라 수출 및 관세환급 규모에 따라 관세환급의 수출효과 및 수출액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향후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 관세청, 「2001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보도자료, 2000년 12월 28일.  
\_\_\_\_\_, 『관세연감』, 각 연도.  
\_\_\_\_\_, 「관세환급실적」, 2001~2013, 내부자료(비공개)  
\_\_\_\_\_,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보도자료, 2014.1.13.
- 박현희, 「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논의와 경제적 효과」, 『통상정보연구』, 제12권 2호, 2010.6, pp. 213~237.  
\_\_\_\_\_, 「수출지원수단으로써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pp. 67~80.
- 장근호·김진수,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연구보고서 97-13,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장근호·허용석,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29권 제3호, 2012.9, pp. 167~189.
- 정재완,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1a, pp. 27~44.  
\_\_\_\_\_, 「관세환급액의 격차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1집, 2011b, pp. 52~74.
- 정재호, 「선진 관세환급제도 구현을 위한 적정 간이정액환급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_\_\_\_\_, 「원유의 관세환급 개선에 대한 소고: 보세구역제도 활용」, 『재정포럼』, 통권 제216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 관세청 용역보고서로 비공개자료임.

정재호·이명현,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보고서 02-06, 한국조세연구원, 2002.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 <http://www.petroleum.or.kr>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okfta.kita.net/>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A%B4%80%EC%84%B8+%ED%99%98%EA%B8%89&x=31&y=12#liBgcolor0>, 검색날짜: 2014.3.10.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A%B4%80%EC%84%B8+%ED%99%98%EA%B8%89&x=31&y=12#liBgcolor3>, 검색날짜: 2014.3.10.

Hao, Lingxin, and Daniel Q. Naiman, eds, “Quantile regression,” No. 149. Sage, 2007.

Hodge, Timothy R., Mark Skidmore, Gary Sands and Daniel McMillen, “Tax base erosion and inequity from Michigan's assessment growth limit: The case of Detroit,” *CESifo Working Paper* No. 4098, Center for Economic Studies & Ifo Institute, 2013.

McMillen, Daniel P., *Quantile Regression for Spatial Data*, New York: Springer, 2012.

- McMillen, Daniel P., “The effect of appeals on assessment ratio distributions: some nonparametric approaches,” *Real Estate Economics*, 41(1), 2013a, pp. 165~191.
- \_\_\_\_\_, “Assessments and Property Tax Variability: A Quantile Approach,” Working paper, Urbana, IL, 2013b.
- Wooldridge, Jeffrey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2013.

##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재호·강성훈

본 연구에서는 FTA 확산이라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세환급제도의 활용 현황을 업체규모별, 산업별, 환급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환급이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환급의 수출에 대한 효과는 개별환급보다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출규모가 증가할수록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간이정액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개별환급과 달리 간이정액환급에서는 관세율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간이정액환급액이 관세율과 상관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FTA 확산으로 간이정액환급의 과다 환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방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관세환급의 수출 탄력성을 산업별로 비교해 보면, 전기 및 전자산업의 수출 탄력성이 높은 반면 석유제품 산업의 탄력성은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석유제품의 관세환급액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 FTA 확산으로 단일 품목에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여 과다 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면세제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보조금 등의 통상마찰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Research on Improving the Duty Drawback Scheme in Korea in the Expansion of FTAs

---

Jaeho Cheung · Sung Hoon Kang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improvement of duty drawback scheme in Korea under the proliferation of FT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duty drawback on export performance by company sizes, industries, and types of duty drawback, respectively using the panel data of drawback from 2001 to 2013.

Upon statistical/regression analysis of this assignment, we found that drawback affected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on export performance. Also, regarding the simplified fixed drawback applied only to small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ts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i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individual drawback. However, our results show that as the export amount increases, the marginal effect of drawback on the export is decreased. This tendency is clearer as the amount of simplified fixed drawback is over 100million KRW.

Furthermore, unlike the individual drawback, our analysis shows that the tariff rate does not affect to export promotion in the simplified fixed drawback, which means that tariff rate plays no significant role on export promotion. This is because we think that SMEs get the simplified fixed drawback regardless of tax rates. Therefore, under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drawback refunds increased by FTAs, expanding the range of SMEs which are eligible for the simplified fixed drawback may be inefficient and harmful.

Comparing the export elasticity of the individual drawback by industry, the elasticity of the petroleum product industries is substantially low.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tariff drawback of petroleum products occupy about 40% of the entire drawback.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petroleum product industries to take a custom bonded zone to eliminate the inefficiencies of tariff drawback. As it is more likely to occur excessive drawback due to multiple tariff rates on single product under the FTA, partly using the temporary tariff exemption system may prevent trade conflicts in future.

## ■ 저자약력

### 정 재 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 성 훈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응용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안승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14-10

##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발행	행	2014년 12월 31일
저자	자	정재호·강성훈
발행인	인	옥동석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ot.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1-466호
정가	가	6,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상일인쇄 (02)2269-6770
I S B N		978-89-8191-740-1 93320

---

